

18~19세기 제주 양태 생산·유통 구조의 변동 양상

김나영*

국문초록

본고는 18~19세기 제주 양태(涼臺)의 생산·수취·유통 구조가 관영 수취 체제에서 민간 유통망으로, 다시 도고(都賈)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 경쟁 구조로 재편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관영 수취 체제와 민간 상업망의 교차·충돌이 제주 양태의 생산과 유통 구조를 어떻게 변화 시키고, 갈등을 심화시켰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곡물 자급이 어려웠던 제주에서 양태는 이전곡의 상환을 매개하는 관영 납부 물종으로 채택되었고, 1727년(영조 3) 대봉(代捧) 제도화 이후 나리포창을 결절점으로 한 관영 환매(還買) 체제를 통해 수취되었다. 그러나 이 체제가 재정·유통상의 구조적 한계로 유명무실해지자, 18세기 후반 이후 양태 교역은 강진·해남을 집산지로 삼아 한양 양대전(涼臺廩)과 전국 시장으로 이어지는 민간 유통망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19세기에 이르러 제주 양태 수공업은 삼중의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신해통공 이후 개성상인[松商]의 도고와 시전의 손실 전가에 따른 판로의 위기, 자생 원료 전죽(箭竹)의 유출·고갈에 따른 원료의 위기, 통영·김제 양태의 부상에 따른 시장 경쟁의 위기가 중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는 제주 양태 수공업의 급격한 쇠퇴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 제주특별자치도 학예연구사, 제주대학교 사학과 박사

모순은 1813년(순조 13) 양제해 모변과 1862년(철종 13) 임술 제주민란으로 분출되었다. 이처럼 제주 양태의 역사는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도고 자본의 팽창이라는 거시적 변동이 도서 생산지에 투영·굴절된 과정으로서, 유통 구조의 모순이 끝내 생산 기반의 위기와 민의 저항으로 귀결된 제주 사회·경제사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주제어: 제주 양태, 이전곡, 나리포창, 표류, 시전상인, 경강상인, 도고, 통영갯

1. 머리말

조선시대 제주는 척박한 토양과 잦은 재해로 인해 도내 곡물 생산만으로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흉년이 들면 국가의 이전곡(移轉穀)에 의존해야 했고, 평상시에도 육지와 물자 교역이 끊기면 생계가 위협받는 구조였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제주민이 육지의 곡물·포목과 바꾸어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미역·어물 등의 해산물’과 ‘수공업 제품’이었다.

수공업 제품 중에서도 갯의 차양 부분인 ‘양태(涼臺)’는 18세기 이후 제주 경제에서 독특한 위상을 차지했다. 미역 채취가 봄철 석 달로 한정된 반면, 양태 제조는 기후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가능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종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기잡이 또한 소실이 많아(제주 백성들이)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은 오직 ‘양태’ 한 가지일 뿐”이라는 제주목사 이원조가 비변사에 아뢰는 글¹⁾이나, “제주에서 삶을 도모하게 하는 것은 오직 양태뿐”이라는 『제주목관첩』의 기록²⁾ 등 당시 여러 관·사찬 사료에는 제주 양태가 단순한 특산물을 넘어 제주민 생계의 근간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1) 이원조, 『탐라록』 현종 7년(1841) 4월 28일조.

2) 『제주목관첩』 현종 15년(1849) 1월 4일조.

제주 양태는 조선후기 상업사의 주요 국면이 교차하는 상품이었다. 조선 정부는 ‘나리포창(羅里浦倉)’이라는 관영 교역 기구를 통해 진흥곡의 대가로 양태를 수취하였고, 민간에서는 강진·해남을 결절점으로 하는 해상 유통망을 따라 서울의 시전(市廛)으로, 나아가 전국으로 유통되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양태를 둘러싼 상품유통 구조의 재편이 본격화되었다. 개성상인의 도고(都賈) 활동과 시전상인과의 분쟁, 통영 양태의 부상 등으로 나타난 이러한 변동은 1813년 양제해 모변과 1862년 임술 제주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요컨대 양태는 관영 상업과 민간 교역, 시전 체제와 사상도고, 도서 지역 생산자와 전국 소비시장이라는 여러 관계 변동을 하나의 상품을 통해 관찰할 수 있는 드문 사례이다.

이에 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다섯 갈래로 진행되어 왔다. 첫째, 수취 체제사의 관점에서 양태수공업의 성쇠를 다룬 연구이다. 조선후기 제주의 조세 수취 체제와 주민 경제생활을 검토하면서 양태수공업의 변창과 쇠퇴 과정, 양태 징수의 폐단을 지적한 연구³⁾가 이뤄졌다. 둘째, 진흥·환곡 정책사의 관점에서 제주 이전곡(移轉穀)의 상환 물증으로서 양태 유통의 제도적 조건을 다룬 연구로, 나리포창의 설치와 운영을 분석하여 양태가 어떠한 정책적 맥락 속에서 수취되고, 유통되었는지를 해명하였다.⁴⁾ 셋째, 상업사의 관점에서 양태의 생산과 유통을 다룬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 중에는 개성상인의 양태 도고 활동 및 시전상인과의 경쟁을 분석한 연구들⁵⁾ 비롯하여, 강진을 중심으로 한 수륙 물산의 집산 구조를

3) 권인혁·김동전, 「조선후기 제주 지역의 수취 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 1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권인혁, 『조선후기 화폐유통과 사회경제』, 경인문화사, 2011; 양진석, 「18, 19세기 제주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조세 수취」, 『18세기 조선사회와 김만덕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9; 이옥, 「18세기 제주의 진상제와 상품 유통」, 『한국사연구』 186, 한국사연구회, 2019.

4) 정형지, 「조선후기 교제창의 설치와 운영—18세기 나리포창 사례를 중심으로」, 『이대사원』 28,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1995; 이옥, 「18~19세기 중반 제주지역 상품화폐 경제 발전과 성격」, 『국학연구』 1, 한국국학진흥원, 2008; 강은정, 「조선후기 나리포창의 설치와 운영」,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문광균, 「18세기 전라도 나리포창의 운영과 변화」, 『역사와 담론』 90, 호서사학회, 2019; 김태홍, 「18세기 나리포창 발전과 제주로의 곡물 조달」, 『학림』 48, 연세사학연구회, 2021.

5) 강만길,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3; 변광석, 『조선후기

밝혔다.⁶⁾ 넷째, 19세기 제주 민란사의 관점에서 양태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사회적 갈등을 다룬 연구가 있다. 즉, 당시 향리층의 상찬계 결성과 포구 장악, 양태·미역 유통 이권을 둘러싼 지배층 내부의 대립과 도민의 저항을 규명한 연구가 그것이다.⁷⁾ 다섯째, 관모 공예사와 민속학적 관점에서 양태 제작의 기술·장인·산지를 정리한 연구도 있다.⁸⁾

이처럼 조선 후기 제주 양태에 관한 개별 분야의 선행 연구는 상당수 축적되었으나, 진흥 정책이나 상업 경쟁 등 특정 주제에 한정되어 생산 지인 제주도의 변화 및 수취·유통 구조 간의 접점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양태의 생산·수취·유통을 잇는 통시적 변동 과정을 유기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다층적 맥락을 연결하는 핵심 상품으로서 ‘제주 양태’에 주목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관영 수취 체제하에서의 양태 교역 양상을, 제3장에서는 양태를 둘러싼 민간 유통망의 형성과 확대 과정을, 제4장에서는 19세기 양태 유통 구조의 재편과 생산 위기를 순차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제주 양태의 생산·유통 구조 변동사를 통시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비변사등록』·『승정원일기』·『일성록』 등 당대 편년 사료를 기초로 삼는 한편, 나리포창의 운영과 제주 물산의 수취·상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나리포사실』을 적극 활용하였다. 아울러 『제주목관첩』·『제주계록』 등 제주 지방행정 문서와 제주목사 이원조의 『탐라록』·『탐라지초본』·『탐영관보록』을 통해 제주

시전상인 연구』, 도서출판 해안, 2001; 노혜경·노태협, 「조선 후기 개성상인의 경쟁과 상생」, 『경영사학』 27-2, 한국경영사학회, 2012.

6) 김덕진, 「조선의 상업과 강진」, 『다산과 현대』 8, 연세대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5.

7) 김진봉, 「칠종조의 제주민란에 대하여」, 『사학연구』 21, 한국사학회, 1969; 권인혁, 「19세기초 양제해의 모면실상과 그 성격」, 『탐라문화』 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88; 고성훈, 「제주도 민란」, 『민란의 시대』, 가람기획, 2000; 박찬식, 「양제해 모면과 상찬계」, 『탐라문화』 3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8; 현행복, 『탐라직방설: 19세기 제주 ‘양제해 모면사’의 새로운 해석』, 도서출판 각, 2013.

8) 장경희, 『조선시대 관모공예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4; 이민주, 「제주 복식의 다름이 조선의 ‘갓’문화에 끼친 영향」, 『한국학』 43-3, 한국학중앙연구원, 2020.

현지의 양태 생산과 수취 실태, 제주 민생 변화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제주 민간 상인들의 양태 교역 및 해상 활동 양상을 다층적으로 추적하고자 『표인영래등록』과 『전객사일기』 등에 수록된 표류 관련 기록을 분석하였다.

요컨대 본고는 제주 도민의 생계 기반이자 이전곡의 주요 상환 물종이었던 ‘제주 양태’의 생산·유통 궤적을 복원하고, 그 과정에서 관(官)의 수취 체제와 민간 상업망이 상호 교차하며 충돌한 역학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주의 사회·경제사를 도서 지역의 고립된 특수사에 한정하지 않고, 18~19세기 조선 경제 구조 재편과 유통 질서의 변동이라는 맥락 속에서 새롭게 재조명하고자 한다.

2. 관영 수취 체제와 양태 교역

‘양태’는 <그림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갓[黑笠]의 밑 둘레 밖으로 둥글넓적하게 퍼진 차양 부분을 이르는 말로, 대나무를 실처럼 가늘게 썬 대오리[竹紵]를 엮어 만든 것이다.



<그림 1> (좌)갓의 구조와 (우)양태

갓은 말총으로 대우를 짜는 총모자, 대오리로 차양을 걸어내는 양태, 그리고 이 두 부분품을 결합하고 옷칠 등으로 마감하는 입자장(笠子匠)의

공정 등 세 단계의 분업을 거쳐 완성되었다. 따라서 양태는 그 자체로 쓰임이 완결된 물건이 아니라, 갓을 이루는 중간 부분품, 곧 반제품의 성격을 지닌 상품이었다.

사료 속 ‘양태’를 지칭한 표기를 검출해 검토하면, ‘涼(涼)臺’·‘涼(涼)太’·‘涼(涼)台’·‘笠涼臺’⁹⁾ 등 다양한 한자 차자표기(借字表記)가 확인된다. 이러한 표기는 동일한 문헌이나, 동 시기 기록 속에서도 일관되지 않고 혼재되어 나타난다. 아울러 양태의 주 제작 재료인 대나무와 관련지어 ‘입죽(笠竹)’¹⁰⁾·‘죽립(竹笠)’¹¹⁾·‘양죽(涼竹)’¹²⁾ 등으로 기재한 용례도 찾아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빈번하고 보편적으로 쓰인 한자 표기는 ‘涼臺’이다.

조선시대 제주에서는 특유의 해양·목축·농업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물종(物種)이 진상·공납물로 마련되었다. 바다에서는 전복·미역·오징어 등의 해산물이 생산되어 진상되었고, 목축이 발달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말과 말총 등도 중요한 물종에 포함되었다. 과일류 가운데서는 굴·유자·청귤·동청귤 등 감귤류가 제주를 대표하는 진상품으로 꼽혔으며, 각종 약재와 비자·표고 같은 임산물도 중앙에 바쳐졌다. 또한 제주에서 생산된 대나무와 말총 등을 이용해 양태·총모자·망건·탕건과 같은 수공업품이 제작되었으며, 이들 물품은 상납이나 교역을 통해 육지로 유통되었다.

특히 양태는 그 가운데 수공업 제품군을 대표하는 물종이었다. 양태의 원료가 되는 대나무는 도내 한라산 등지에서 산출됨은 물론, 총모자의 원료인 말총 또한 목마장에서 자급되었으므로, 제주는 관모(冠帽) 수공업의 원료 산지이자, 제작지라는 이중의 조건을 아울러 갖추고 있었다. 더구나 양태 결기는 제주의 대표적인 가내수공업으로 전역에서 널리 행해졌으며, 그 산물인 양태는 곡물과 맞바꿀 수 있는 제주 민호의 생계를 지

9) 『영조실록』 영조 38년(1762) 4월 15일조.

10) 『영조실록』 영조 25년(1749) 7월 20일조.

11) 『영조실록』 영조 33년(1757) 10월 23일조.

12) 이원조, 『탐라록』 현종 7년(1841) 9월 25일조; 『탐영관보록』 헌종 7년 10월 29일조.

탱하는 긴요한 소득원이기도 하였다.

『정조실록』에서는 “양(涼)이란 대나무를 엮어 만든 것으로, 곧 절풍건(折風巾)의 본질(바탕)이며, 속칭 양태(涼臺)라 한다”고 풀이하면서 “미역과 함께 두 물건은 모두 제주에서 나는 것이 좋다”¹³⁾고 특기하였다. 제주민들의 정교한 기술로 생산해 낸 양태는 왕실의 정례 진상품으로도 공급되었다. 19세기 『육전조례』에는 상의원에 소용되는 양태 10부(部)를 제주에서 매년 상송(上送)하도록 규정¹⁴⁾하고 있어, 왕실의 양태 수요 역시 제주 생산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양태는 왕실 봉상(奉上)의 대상인 동시에, 제주 민호(民戶)의 생계를 지탱하는 소득원으로서 육지로 유통되던 상품이기도 하였다.

2.1. 나리포창과 양태의 대체 상황

화산섬인 제주는 토양 대부분이 화산회토로 이루어져 있어 농경 조건이 매우 열악했다. 가경지는 해안 저지대에 국한되었고, 그마저 박토(薄土)여서 ‘촌토여금(寸土如金)’이라 일컬어졌으며, 수전(水田)이 거의 없어 주곡(主穀)은 보리와 조에 한정되었다. 제주목사 이원조가 비변사에 보고한 『탐라록』과 『탐영관보록』에서 “토질이 누에를 치거나 면화를 재배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듯,¹⁵⁾ 곡물은 물론 직물 원료 생산에도 불리한 환경이었다. 여기에 태풍과 가뭄 등 자연재해가 빈발한 데다 지리적 고립으로 외부 곡물 수급조차 용이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주민의 생업은 자연히 반농반어(半農半漁)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도민들은 미역·전복 등의 해산물 채취와 말총·대나무를 이용한 수공업으로 생계를 보완하였고, 이를 육지의 곡물과 교환함으로써 부족한 식량을 충당하였다. 그러나 민간 차원의 교역만으로는 대규모 흉황(凶荒)에 대처할 수 없었으며, 흉년이 들 때마다 제주는 국가의 진휼에 의존하

13) 『정조실록』 정조 10년(1786) 10월 5일조.

14) 『육전조례』 권10, 공전(工典), 상의원(尙衣院), 의대색(衣櫛色), 예공(例貢).

15) 이원조, 『탐라록』 현종 7년(1841) 4월 28일조; 『탐영관보록』 현종 7년 11월 6일조.

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 정부가 이전곡 제도를 운영하고, 그 상환 수단으로 제주 산물을 활용하는 방식을 모색하게 된 것은 바로 이 같은 자연·경제적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 ‘나리포창(羅里浦倉)’이었다. 나리포창은 본래 제주를 위해 설치된 기구가 아니었다. 1720년(숙종 46) 공주와 연기의 접경인 금강 연안 나리촌에 별장(別將)을 두고 배를 마련하여 금강 상·하류를 오가며 어염(魚鹽)을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고갈된 진흙청 재원을 보충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되었다.¹⁶⁾

그러나 1722년(경종 2) 창고를 임피로 옮기면서¹⁷⁾ 제주 3읍의 진흙을 전담하는 기구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진흙청에서 획득한 자금으로 곡물을 사들여 나리포창에 비축해 두었다가, 제주에 흉년이 들면 이를 이전하여 구제하도록 한 것이다. 운영 방식도 이에 따라 재편되었다. 연안의 어염을 판매하던 중전의 방식 대신, 제주에 이전곡을 내려보내고 그 대가로 제주에서 생산되는 양태·생선·미역 등의 물산을 거둬들인 뒤, 이를 나리포에서 내다 팔아 얻은 대금으로, 다시 곡물을 사들여 비축하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제주산 물산은 현지에서만 산출되는 데다 생산 여건도 유리하여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이에 판매해 얻은 수익금은 진흙곡 재확보에 쓰이거나, 나리포창의 각종 운영 경비로도 충당되었다. 1725년(영조 1)에는 나리포 곡물과 제주의 어곽(魚藪, 어물과 미역)을 서로 교역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¹⁸⁾

그러나 1727년(영조 3), 제주에서는 미역 생산이 격감하여 이전곡을 미역으로 상환하기가 어렵게 되자, 대신 다른 산물로 납부하는 ‘대봉(代捧)’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A) 『비변사등록』 1727년(영조 3) 6월 11일 기사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16) 『나리포사실』 「나리포신설절목(羅里浦新設節目)」, 【康熙 庚子(숙종 46, 1720)】; 『택리지』 외편 권20, 경비사(經費司), 황정부(荒政部) 1, 이전각창(移轉各倉), 충청도.

17) 『나리포사실』 「이설임피(移設臨陂)」, 【雍正 壬寅(경종 2, 1722)】

18) 『비변사등록』 영조 1년(1725) 11월 15일; 김정호, 『대동지지』 권12, 나주, 창고조

A) (좌의정) 홍치중이 아뢰기를, “이것은 제주시제어사 김상석의 장계입니다. 이전곡을 미역으로 대신 받는 일에 대하여 백성들이 가을에 가서 곡식으로 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사가 공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산촌은 가을에 가서 곡식으로 받고, 포춘에서는 종전대로 미역으로 받기를 청하였습니다. 신이 듣기로는 제주의 미역 생산은 전에 비하여 격감하였기 때문에 전도민의 소원은 대체로 같다고 합니다. …” 하여, 좌참찬 김홍경이 아뢰기를, “전라도의 나리포창은 대체로 제주의 일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주의 이전미를 어물과 미역으로 받아 곡물로 바꾸어 본창에 보관하였다가 제주의 구휼 밀천으로 쓰기로 한 것인데, 지금 만일 곡식으로 받아 제주에 유치하기로 한다면 사실 당초에 어물과 미역으로 대신 받아 곡물로 바꾸기로 한 본의도 아니며, 또한 나리포창의 곡물도 앞으로 감소하여 장차 대처할 길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미역의 생산이 참으로 격감하여 산촌 백성이 쟁겨 내기가 어렵다면 토산의 양태 같은 물건으로 미역 대신 계산하여 받아 곡물로 바꾸어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하니, 홍치중이 아뢰기를 “산촌에 사는 백성들에게서는 어물이나 미역으로 받지 말고, 토산의 잡물로 대신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민원에 따라 각기 토산으로 받도록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¹⁹⁾

A)에서 확인되듯, 당시 시제어사 김상석은 이전곡을 미역으로 대신 받는 문제에 대해, 백성들이 가을에 곡식으로 내기를 원하니 산촌은 가을에 곡식으로, 포춘은 종전대로 미역으로 받게 해 달라고 청하였다. 이에 좌참찬 김홍경은 나리포창의 본의가 어물과 미역을 곡물로 바꾸어 진휼 밀천을 마련하는 데 있으므로, 곡식으로 받아 제주에 유치하면 본창(本倉)의 곡물이 감소해 진휼 재원이 고갈된다고 반대하였다. 그러면서 미역을 대신할 토산물로 ‘양태’를 제시하였고, 영조가 이를 받아들여 각기 토산으로 받도록 분부함으로써 양태의 대봉이 제도화되었다.

요컨대 양태의 대봉은 진휼 재정의 순환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채택된 것이었으며, 이후 양태는 어곽과 더불어 이전곡 상환물의 주종을 이루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양태가 미역을 제치고 상환물의 중심으로

19) 『비변사등록』 영조 3년(1727) 6월 11일조.

부상한 데에는 두 물종의 생산 조건 차이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미역은 잠채(潛採) 기간이 봄 석 달에 국한된 데다 풍흉에 따른 작황 변동이 심하였다. 실제로 1745년(영조 21)에는 봄 가뭄과 거센 풍랑으로 미역 바위가 뒤집혀 채취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대납할 미역 물량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보고가 올라올 정도²⁰⁾였다. 반면 양태 제조는 기후 조건에 구애받지 않아 연중 작업이 가능하였고, 남녀노소 누구나 종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양태에 대한 의존도는 날로 높아져 갔다.²¹⁾

나아가 이 같은 생산상의 이점에 대봉물 수취라는 재정적 강제가 결합하면서, 양태 경기는 제주 전역에서 상시적 가내수공업으로 정착해 갔다. 물론 관모 수공업의 전통 자체는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1664년(현종 5) 전 제주목사 이익한이 “제주 백성들의 풍속은 공(工) 일을 업으로 삼고 있으며, 비록 여자라도 반드시 갓[駮笠]을 만들어 육지에 내다 팔아 살아간다”²²⁾고 아뢴 데서 그 오랜 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내수공업에 머물던 양태 생산이 도민 전체의 생계 산업으로 확장된 직접적 계기는 ‘나리포창 대봉제(代捧制)’의 성립에서 찾을 수 있다.

2.2. 관영 환매(還買)의 운영과 양태 유통의 한계

나리포창을 매개로 한 제주 구휼 체계의 핵심은 곡물과 물산이 쌍방향으로 오가는 ‘관영 환매(還買)’ 체제에 있었다. 진휼청의 자금으로 사들인 곡식을 이전곡으로 제주에 내려보낸 뒤, 그 대가로 현지 특산물로 상환 받는 방식이었다. 그 순환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되었다. ① 나리포창의 곡물을 제주로 이전하면, ② 제주민이 그 값을 양태·미역·말총 등으로 대봉(代捧)하고, ③ 관아가 수봉한 물산을 나리포 등 연안 포구에서 육지 상인과 주민에게 발매(發賣)한 후, ④ 그 매각 대금으로 다시 곡물을 사들여 창고에 재비축하는 구조²³⁾였다. 관(官)은 이러한 방식을 통

20) 『승정원일기』 영조 21년(1745) 5월 26일조.

21) 『제주목관첩』 현종 15년(1849) 1월 4일조.

22) 『현종실록』 현종 5년(1664) 3월 26일조.

해 제주 구휼의 재원을 스스로 되채워 지속적으로 선순환 체계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때 해당 관영 유통 구조의 중심에 놓인 물종은 ‘양태’였다. 화폐 유통이 미약하고 장시(場市)가 개설되지 않았던 당시 제주²⁴⁾에서 나리포창을 매개로 양태 등 현지 특산물과 육지의 이전곡을 교환하는 관영 환매 체제는 도민들이 식량 자원인 곡물을 공식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 통로로 작동하였다. 그러나 이 환매 구조는 처음부터 관영 상업 특유의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교환 비율의 비시장적 책정, 발매 단계의 왜곡, 그리고 수취·발매 전 과정에 개재(介在)한 중간 관리층의 농간이라는 삼중의 모순이 그것이다.

첫째, 교환 비율이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관(官)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것도 시가와 동떨어진 수준에서 책정·고정되었다는 점이다. 1749년(영조 25), 기존 나리포창을 임피현에 소속시키면서 마련한 절목에서 양태 1립의 절가(折價)를 전(錢) 2전 5푼으로 정하였으나, 그 값이 너무 비싸 팔리지 않은 채, 산실(散失)될 것을 우려해 곧 5푼을 내려 2전으로 하였다.²⁵⁾ 이후 1763년(영조 39) 임피현령 조지명에 의해 입안된 개정 절목에서는 양태 수봉량을 종전의 절반으로 감축하고, 그 대신 망건·마미(馬尾)·어물·표고 등으로 구색을 갖추게 하는 한편, 양태 100급(級)을 기준 단위로 삼고 상납자의 성명을 기입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도록 하였다.²⁶⁾ 이듬해인 1764년(영조 40) 제주위유어사 이수봉이 마련한 개정 절목에서는 양태가를 1전 6푼으로 재조정하였다. 미역은 구황 식품이라

23) 문광균, 「18세기 전라도 나리포창의 운영과 변화」, 『역사와 담론』 90, 호서사학회, 2019, 167~170쪽 참조.

24) 이원조, 『탐라지초본』 권1, 제주, 토속조(土俗條), 「... 고을에는 시장이 없다 [재화는 돈을 사용하지 않고, 포목만을 사용하므로, 팔고 사는 것이 매우 어렵다] ... 길쌈과 채집을 업으로 삼는다 [이 땅이 누에치기와 솜 타는 일에 적합하지 않아서 여인들은 양태를 틀고] 망사리를 땀어 미역을 따고 전복을 캐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겨우 열 살이 되면 이미 잠수의 기술을 배운다」 ...」

25) 『나리포사실』 「이첨사유폐속어임피사절목(以僉使有弊屬於臨陂事節目)」【乾隆己巳(1749)】

26) 『나리포사실』 「개정절목(改節目)」【乾隆癸未(1763)】 ; 『비변사등록』 영조 39년(1763) 8월 8일조.

수요가 커 다소 비싸도 판매될 수 있었지만, 양태는 수요가 한정된 데다 값마저 높아 한꺼번에 팔기 어려웠으며, 자본이 창고에 묶이는 낙본(落本)의 우려가 컸기 때문이었다. 이에 제주 사상(私商)의 거래가인 8푼의 두 배로 계산해 1전 6푼으로 기준을 세움으로써, 섬 백성의 원통함과 육지 백성에 대한 강매 폐단을 동시에 막고자 하였다.²⁷⁾

그러나 두 차례의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1전 6푼의 법식 가격은 사상의 실제 매매가를 크게 웃돌아, 양태 판매 부진이라는 근본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나아가 양태 가격의 조정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관아 간 행정적 혼선도 빚어졌다. 1768년(영조 44) 진휼청 제조(提調) 정홍순의 보고에 따르면, 나리포창 측은 수정 절목에 따라 양태의 전가(錢價)를 1전 6푼으로 감액하고, 쌀 환산량 역시 이에 맞추어 8승(升)으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제주 관아 측은 돈이 감해지면 쌀도 따라 감해야 하는 이치를 알지 못한 채 종전대로 양태 1립당 쌀 1두[10승]를 그대로 지급하였다. 그 결과 두 포구 간의 회계 장부가 서로 어긋난 채 수년간 방치되었고, 1764년 개정 절목 이후 제주에서 양태 1립당 2승씩 과다 지급(加給)된 쌀의 누적액이 1,500여 석에 달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판매 부진이 심한 양태 대신 미역으로 대체 납부하게 하거나, 도민과 육지 백성이 원하는 품목을 자율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법식을 재차 변통하기에 이른다.²⁸⁾

한편 제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가격 조정은 수취가의 일방적 삭감으로 인식되었다. 1784년(정조 8) 제주목사 엄사만의 분등장계(分等狀啓)에는 도민들의 불만이 다음 B)와 같이 전한다.

B) 나리포창을 설치한 초기에는 양태 1립에 백미 1말 2되 5홉이기 때문에 섬 백성들이 즐겁게 환무(換貿)했는데, **중간에 감해서 1말이 되고 또 감해서 8되가 되니, 시가로 말하더라도 8되의 쌀도 역시 부족한 건 아닌데 받아먹는 쌀이 점차로 값이 떨어져 원망하는 소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전곡을

27) 『나리포사실』 「개절목(改節目)」 【乾隆甲申(1764)】 ; 『비변사등록』 영조 40년(1764) 5월 2일조.

28) 『비변사등록』 영조 44년(1768) 9월 5일조.

들어보내는데 연읍에서는 늘 피잡곡(皮雜穀)으로 구차스럽게 그 숫자만 채워 도리어 섬 백성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을 만드니, 이번엔 정실미(精實米)로 획송해 달라는 것입니다.²⁹⁾

이처럼 관정가(官定價)와 시가 간의 괴리, 그리고 도·육(島陸) 간 회계 불일치는 환매 구조가 운영되는 전 기간에 걸쳐 해소되지 못한 채, 제주 도민들의 불만과 관의 재정 손실을 동시에 누적시켰음을 엿볼 수 있다.

둘째, 판매 부진에 따른 부담을 민간에 전가한 ‘강제 판매[排買]’의 폐단이다. 나리포창은 본래 제주 물산을 창고에 집적한 뒤, 이를 매입하려는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전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물산을 한곳에 쌓아두고 상인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물산이 여러 해 동안 팔리지 않은 채 적체되는 일이 빈번하였다. 이에 1749년(영조 25) 정부는 임피 등 전라·충청 10읍을 나리포창의 속읍(屬邑)으로 정해 제주 물산을 배정하여 이를 인수·판매한 뒤 3개월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³⁰⁾ 이는 창고에 장기간 적체된 물산의 처분 책임을 인근 군현에 분담시킨 조치로, 사실상 판매 부진의 부담을 속읍에 전가한 강제 판매의 성격을 지녔다. 이후 1758년(영조 34)에는 그 대상 속읍이 20읍으로 확대되었으며, 나아가 상인 등 잡인(雜人)의 임의 매매를 엄금하여 나리포창과 속읍을 중심으로 한 판매 질서를 더욱 강화하였다.³¹⁾

여기에 환무(換貿) 대상 물산의 품질 저하 문제까지 겹쳤다. 1769년(영조 45) 개정 절목에서는 “갓양태는 품질이 떨어지고 미역은 누렇게 말라 도리어 사상(私商)의 물건만도 못한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수량만 유독 많아 창고에 쌓이기만 할 뿐 팔리지 않자, 억지로 민간에 외상으로 넘기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우려가 발생하는 가운데 감색(監色)들마저 중

29) 『비변사등록』 정조 8년(1784) 11월 30일조.

30) 『나리포사실』 「이첨사유폐속어임피사절목(以僉使有弊屬於臨陂事節目)」 【乾隆己巳(1749)】

31) 『나리포사실』 「개절목(改節目)」 【乾隆戊寅(1758)】

간에서 포함(逋欠)을 일삼는다'고 진단하였다.³²⁾ 결국 제주 진휼 재원을 충당한다는 명목하에 발생한 재정 부담은 나리포 주변 20개 읍 연해민에게 '강제 판매'라는 신종 부세의 형태로 전가되었다. 이는 제주 도민과 호남 연읍 주민 모두에게 상호 유익을 도모하고자 했던 당초의 제도적 구상과는 정반대의 파행적 결과를 초래한 것이었다.

셋째, 양태 수취·판매의 전반에 걸쳐 자행된 중간 관리층과 토호층의 부정과 미수금의 누적이다. 당시 제주에서는 토호와 향리 등 관속배들이 이전곡을 선점·유용하는 한편, 그에 따른 물산 수취의 부담을 일반 민호(民戶)에게 전가하는 폐단이 극심하였다. 이러한 중간 수탈의 폐단은 제주에 파견된 어사 절목을 통해 수차례 지적³³⁾되었다. 나아가 지방관이 관영 수취 구조를 사적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도 확인된다. 1769년(영조 45) 제주어사 박사륜은 전 제주목사 남익상이 남형(濫刑)으로 인명을 살상하고, 마미(馬尾) 700근과 양태 1,500립을 강제로 매입한 불법을 적발하여 그 죄상을 논핵하였다.³⁴⁾ 이 사건을 계기로 영조는 이듬해 “사상을 제외하고 목사·판관과 두 현감이 섬 안에서 마미 1근, 양태 하나, 말 2필이라도 사사로이 침탈하는 자는 드러나는 대로 금고(禁錮)의 형률을 시행하라”는 엄명을 내렸다.³⁵⁾

또한 백성들이 양태와 총렵(聽獵)의 자유로운 매매를 허용하였다.³⁶⁾ 지방관의 사사로이 침탈과 불법 적재를 장물로 엄단하는 동시에 양태와 총렵의 민간 매매를 허용한 이 조치는, 기존 관영 수취 규율만으로는 지방관의 수탈과 유통 모순을 통제할 수 없음을 조정 스스로 인정한 것이자, 양태 유통의 주도권이 민간 사상 거래로 옮겨가는 결정적 제도적 분기점이었다.

32) 『나리포사실』 「개정절(改節目)」 【乾隆己丑(1769)】 ; 『비변사등록』 영조 45년(1769) 12월 28일조.

33) 『비변사등록』 영조 14년(1738) 6월 12일조; 같은책, 영조 38년(1762) 11월 15일조; 같은책, 영조 39년(1763) 10월 7일조; 같은책, 영조 50년(1774) 8월 20일조; 『정조실록』 정조 5년(1781) 6월 17일조.

34) 『영조실록』 영조 45년(1769) 10월 2일조; 『비변사등록』 영조 46년(1770) 5월 21일조.

35) 『비변사등록』 영조 45년(1769) 10월 4일조.

36) 『비변사등록』 영조 46년(1770) 2월 14일조.

이러한 삼중의 모순 속에서 상환 구조는 빠르게 부실화되어 갔다. 제주 측의 상환 지연과 퇴봉(退捧) 요청이 관례화되면서 미수(未收)는 해마다 쌓여, 1770년(영조 46)에는 이전곡 대가로 갚아야 할 양태·어괵의 미수액이 곡물로 환산해 1만 9천여 석에 이르렀다.³⁷⁾ 같은 해 조정이 마련한 이른바 ‘경인정식(庚寅定式)’은 이처럼 흐트러진 이전곡 수취·상환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 규정 시행 이후에도 나리포창의 기능은 회복되지 못한 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사료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³⁸⁾

이후에도 1782년(정조 6) 제주순무어사 박천형이 별단을 통해 창고 관리(倉吏)들의 간교와 양태 정가 삭감에 대한 도민의 억울함을 다시 지적하였으나, 조정은 구례(舊例)를 유지하는 선에 그쳤다.³⁹⁾ 결국 1787년(정조 11) 제주민의 운송 편의를 명분으로 나리포창을 나주 제민창(濟民倉)으로 통합 이설하고, 제주 물산을 나주 인근 10읍에서 분매(分賣)하게 하였다.⁴⁰⁾ 이후 1789년(정조 13) 전라감사를 지낸 서용보가 “나리포의 물종이 간혹 나온다 해도 10년에 한 번, 혹은 수십 년에 한 번에 지나지 않고, 몇 척의 배에 실은 양괵(涼藪)일 뿐”이라고 술회할 만큼⁴¹⁾ 관영 수취 및 유통 체계는 이미 실체를 상실하였다.

요컨대 관영 교역의 퇴조가 곧, 양태 교역 자체의 위축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18세기 후반 이후 조선 조정은 관영 이전(移轉)만으로 제주에 필요한 곡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어렵게 되자, 민간 상업 유통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선회하였다.

1794년(정조 18) 부사직 심낙수는 삼남(三南) 연해의 상선이 곡물을 싣고 제주에 들어올 경우, 해당 읍에서 부역을 덜어 주어 입도를 장려하자

37) 『비변사등록』 영조 46년(1770) 윤5월 22일조.

38) 『정조실록』 정조 8년(1784) 11월 27일조, 「... 나리포에 창고를 설치한 지가 지금 65년이나 오래되었는데, 남아 있는 저축이 얼마 안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한결같이 경인정식(庚寅定式)을 만든 이후로 곧 유명무실한 데로 귀결되고 있다. ...」

39) 『비변사등록』 정조 6년(1782) 1월 15일조; 같은 책, 정조 6년(1782) 3월 13일조.

40) 『정조실록』 정조 10년(1786) 10월 5일조; 『비변사등록』 정조 10년(1786) 10월 6일조; 『비변사등록』 정조 11년(1787) 1월 4일조.

41) 『비변사등록』 정조 13년(1789) 11월 22일조.

고 건의하였다. 연해 지역의 곡가 상승을 우려하여 견역(鋤役) 조치 자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조정은 상업을 목적으로 제주에 들어가는 선박의 왕래를 금하지 말도록 삼남에 신칙하였다.⁴²⁾ 이는 제주 진흙 및 곡물 조달을 관영 이송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 상선의 자율적 유통망을 활용하려는 정책적 전환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양태 산지로 이름난 김제의 양태 제조를 방금(防禁)하는 등 제주민의 주요 생업이던 양태 생산과 판매권을 보호하려는 조치⁴³⁾도 병행되었다. 이는 나리포창의 대봉 체제를 거치며 형성된 ‘양태=제주민의 주요 생업’이라는 인식이 이후의 지방 통치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관영 수취 체제는 악화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제주 양태가 지닌 생업적·상품적 가치는 오히려 제도적으로 인정·보호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그 결과 제주 양태의 생산과 유통은 관영 교역의 틀에서 벗어나 점차 민간 사상이 주도하는 시장 유통 구조로 재편되어 갔다.

3. 민간 유통망의 형성과 유통 양상

3.1. 집산지 형성과 유통권역 확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중반에 이르는 시기, 제주도의 공무역(公貿易)은 현지 특산물과 수공업 제품을 본전(本錢)으로 삼아 육지의 곡물 등과 교환하는 물물교환의 형식을 띠었다. 이때 제주민들이 어물과 양태를 매개로 입수한 핵심 물품은 ‘미곡’이었다. 이는 구황(救荒)을 목적으로 한 공식 교역뿐만 아니라, 사적인 미곡 구입에서도 미역·전복·양태 등 제주 특산품이 실질적인 환화(換貨)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제주안무어

42) 『비변사등록』 정조 18년(1794) 11월 23일조.

43) 이원조, 『탐영관보록』 헌종 7년(1841) 11월 6일조, 『제주목관첩』 헌종 15년(1849) 1월 4일조.

사 김상헌이 임무를 마치고, 귀경하는 선상에서 [제주사람] 영장(領將) 문계명과 나눈 문답인 다음 C-1)에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구조는 19세기에 이르러서도 큰 변동이 없이 지속되었다. 당대의 사료인 『제주목관첩』 내의 기록 C-2) 또한 제주의 척박한 토지 환경과 상습적인 풍수해를 극복하기 위해 양태를 견고, 미역을 캐어 육지의 미곡과 교환하며 생계를 이어 나간 제주민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C-1) 제주 사람들은 불행히도 섬 중에 태어나서 의식(衣食)이 모두 어려우므로 반드시 육지에서 얻어다가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빈천한 백성들은 다만 **곽중(藋中) 피물(皮物)을 가지고 연해 여러 고을에 가서 팔아 힘든 삶을 연명합니다.** 또 주관(州官)을 영송(迎送)하고, 진상으로 왕래하는 때가 아니면 또한 임의로 육지에 나갈 수 없으므로 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관인(官人)의 행차 모시기를 영광이고 행운으로 여깁니다.⁴⁴⁾

C-2) 본도는 바다 가운데에 가득 차 사이가 동떨어져 연락이 안됩니다. 바다에서의 화오리 바람의 신기루를 일으키는 안개로 풍년은 적고 흉년이 많아서 늘 걱정입니다. 토지는 척박하니 가난한 백성들의 마음마다 바다를 피하여 육지로 가고자 했습니다. 조를 뿌리고 보리를 파종하여 **곡식과 현금의 귀한 것을 바꾸니, 양태를 견고 미역을 캐어 물가가 비싼 도회(都會)에서 사는 근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⁴⁵⁾

18세기 후반 이후 관영 교역의 실효성이 점차 약화되면서 생긴 공백은 민간 상업 유통망이 급속히 메워나갔으며, 그 출발점은 제주의 ‘포구(浦口)’였다. 당시 육지와 달리 정기 장시가 개설되지 않았던 제주는 양태·미역을 내보내고 필요한 쌀·베를 육지에서 들여와야 했으므로, 그 관문인 포구가 물화 교환의 결절점 역할을 하였다. 제주 연안의 여러 포구 가운데 특히 건입포·화북포·조천포가 물류의 중심을 이루었으며, 이곳에

44) 김상헌, 『남사록』 권4, (1602) 정월 27일 경신조.

45) 『제주목관첩』 현종 14년(1848) 5월 초1일조.

서 산간부와 해안부 간의 물자 교환은 물론,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미곡·포목의 거래가 일괄적으로 처리되었다.⁴⁶⁾

이처럼 제주 포구를 중심으로 집산된 물화는 해로를 거쳐 육지부로 운송되었다. 조선후기 제주 특산물이 육지부로 운송되던 대표적 관영 항로는 제주 포구를 출발하여 서남해안을 따라 북상한 뒤 금강 하구의 임피 나리포창에 이르는 연안 해상로였다. 곧 건입포·화북포·조천포 등 제주 포구를 출발하여→ 추자도 해역→ 진도·해남·영암 연안→ 영광 칠산해(七山海)→ 위도·고군산군도→ 금강 하구의 임피 나리포창으로 이어지는 경로였다. 조선 조정이 제주 물산을 1차적으로 임피 나리포창까지 운송하도록 지정한 것은, 금강 수운을 통해 해당 물화를 전라 북부 11개 읍과 충청 남부 9개 읍의 내륙 시장으로 효율적으로 분산·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항로의 최대 난제는 영광 앞바다의 ‘칠산해’ 통과에 있었다. 사료상에서 제주인들이 양태와 미역을 운송할 때 “칠산의 험한 바다를 건넌다”고 명시될 만큼 칠산해는 조류가 세고 암초가 많아 파선 사고가 빈번했다. 이렇듯 칠산 바다에서의 연이은 파선 폐단을 줄이고자 한 제주 무신 김귀택의 건의를 수용하여, 1787년(정조 11) 관영 격창(格倉)의 기능이 임피 나리포창에서 칠산양 남쪽의 나주 제민창(濟民倉)으로 이전·통합되는 조치가 단행⁴⁷⁾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광 칠산해의 험준한 해상 조건과 장거리 항해에 따른 파선 위험은 제주 물산의 관영 운송로뿐만 아니라, 민간 교역의 전개에도 영향을 미쳤다. 제주 주민들과 민간 상선은 관창(官倉)의 이설 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해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육지부 최단 거리 입항 거점으로서 강진과 해남 연안 포구들을 지리적·실리적 대안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이러한 실상은 1796년(정조 20) 전라감사를 지낸 우승지 이서구가 정조에게 아뢴 다음 D)의 발언에 잘 드러난다.

46) 이옥, 「18~19세기 중반 제주지역 상품화폐경제 발전과 성격」, 『국학연구』 1, 한국국학진흥원, 2008, 518쪽.

47) 『정조실록』 정조 10년(1786) 10월 5일조; 같은 책, 정조 17년(1793) 7월 26일조.

D) (우승지) 이서구가 아뢰었다. “ ... 정미년(1787) 무렵 제주 무관 김 귀택이 의견을 아뢰기를, 제주에서 양태와 미역을 실어 바칠 때 칠산(七山)의 험한 바다를 지나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비로소 나주로 옮겨 설치하였습니다. ... 대체로 창고를 설치한 곳이 탐라와 가까우면 공적인 것이든 사적인 것이든 제주에서 올라오는 양태와 미역이 그곳에 많이 쌓이게 되어 좋은 값을 받고 팔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고을에서 이를 곡식으로 바꾸는 과정에도 이미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섬 백성들은 오히려 나주조차 멀다고 여겨 반드시 강진·해남 등의 고을로 다시 옮겨 설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몇 해 전 제주목사 심낙수가 이 일로 상소하여 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⁴⁸⁾

상기 D) 사료는 조선후기 제주 물산의 육지부 전진기지가 임피 나리 포창에서 나주 제민창을 거쳐 강진 남당포 방면으로 논의·이전되어 간 정책적 경과와 그 바탕에 작용한 시장 경제적·지리적 요인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첫째, 관창 이설의 직접적인 계기는 1787년(정조 11) 제주 무관 김귀택의 건의에서 드러나듯 영광 칠산 바다를 건너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파선 폐단에 있었다. 둘째, 칠산해를 피하기 위해 나주로 관창을 옮겼으나, 제주와 지나치게 인접한 지역으로 물산이 집중되면서 양태와 미역의 현지 시세가 폭락하고 곡물과의 환화(換貨)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급 과밀 및 교환가치 하락’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셋째,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주민들과 제주목사 심낙수 등은 나주보다 해상 거리가 가깝고 육지부 유통망 연결이 용이한 강진·해남으로의 재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즉, 관창 이설 논의의 배경에는 이미 민간 차원에서 제주와 강진·해남 사이에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던 해상 교통 및 물류 네트워크가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조선 조정이 전라도 연해 구역에 설정한 제도적 장치 역시, 이러한 민간 해상 교류와 관영 물류의 결합을 촉진하였다. 조정은 원활한 민간 해

48) 『승정원일기』 정조 20년(1796) 6월 11일조.

상 교류와 사신 왕래, 진상품 운송 등 공무(公務) 수행을 위해 전라도의 특정 연안 지역을 ‘도회관(都會官)’으로 지정하였는데, 그 핵심이 바로 강진·해남·영암 지역이었다.⁴⁹⁾ 특히 도회관으로 지정된 곳에는 적절한 순풍을 기다리는 ‘후풍처(候風處)’가 함께 두어졌다. 강진의 백도도(白道島) 및 남당포(南塘浦), 해남의 관두포(館頭浦/館頭梁), 영암의 이진포(利津浦) 및 고달도(古達島)가 대표적인 후풍처였다. 제주로 향하려면 북풍 및 서북풍을 기다려야 했으므로, 공물 상납을 마치고 돌아가는 진상선은 물론, 민간 상선 역시 이들 후풍처에 체류하며 출항 기회를 살폈다. 이처럼 강진·해남·영암의 도회관과 후풍처는 제주와 육지를 잇는 제도적·지리적 출입구로 기능하는 동시에, 선박과 물화, 인적 왕래가 집중되면서 제주 민간 상선이 육지 상권과 접촉하며 상업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특히 강진⁵⁰⁾ ‘남당포’는 제주 상선의 입출항 및 대규모 물화 취급에 있어 전략적 요충지였다. 강진만은 최북단 깊숙이 위치하여 풍랑을 피하기 용이하였고, 육로를 통해 전라감영(전주) 및 한양으로 직통하는 교통망과 이어져 있어 제주산 특산물이 육지로 유통되는 1차 관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서구가 남당포 소재 전라병영 소속 창고[倉舍]의 재고를 정비하여 제주 진흥곡 및 물산 수용의 전진기지로 전환하려 한 것은, 남당포가 이미 민간 상선의 활발한 이용을 통해 대규모 물물교환과 안전 확보가 입증된 물류 거점이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남당포를 비롯한 강진·해남 연안 포구에서는 민간 상선에 의한 왕복 교역(往復交易)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주 상인들은 양태·미역·말총 등 도내 특산물을 싣고 출항하여 남해안 거점에 입항한 뒤, 돌아오는 편에 미곡·소금·면포 등 도내에서 자급하기 어려운 물자를 실어

49) 김상헌, 『남사록』 권1, (1601) 9월 초1일 을미조; 『정조실록』 정조 18년(1794) 12월 25일조; 이원조, 『탐라지초본』 권3, 제주, 구례조(舊例條), 도회관(都會官).

50) 정약용이 강진 유배 중 지은 「탐진어가(耽津漁歌)」의 “추자도 장삿배가 고달도에 묵고 있는데, 탐라(제주) 갓 차얌양태를 한 배 가득 싣고 있네”라고 읊은 기록은 강진·영암 연안에 집산된 제주 양태가 전국 갓 수요의 절반 이상을 충당하던 물류 실상을 반영한다.

오는 교역을 반복하였다. 이는 국가가 지정한 관영 교역의 북방 종착지가 금강 하구의 임피 나리포였던 데 비해, 민간 상선이 칠산 해역의 험한 해로를 피해 이용해 온 남해안의 집산 거점은 강진과 해남이었음을 보여 준다. 남해안 집산지에서 북상한 제주 양태의 최종 소비 종착지는 한양의 양대전(涼臺廩)이었다. 1791년(정조 15) 양대전 시민들이 “서울의 양태가 끊어진 뒤로는 오로지 제주의 양태에 의지하고 있다”⁵¹⁾고 진술한 데서 보듯, 18세기 후반 서울 시전의 양태 공급은 제주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이 시기 양태 교역의 기본 골격은 ‘제주(생산지)-강진·해남(1차 집산지)-중간상인(도고)-서울 양대전(소비지 시전)’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유통 체계였다. 그러나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특권 시전 중심의 유통 골격은 사상 자본, 특히 개성상인의 침투로 구조적 변용을 맞았다.

1810년(순조 10) 양대전 상인들은 “근래 송상의 세력이 더욱 커져 이권을 독차지하고, 제주에서 나오는 길목인 강진·해남 등지에서 도고(都賈)를 하여 도회 각처에 직접 파송하기 때문에 경성에 들어오는 것이 전혀 없다”고 호소하며, 본전(本廩) 사람을 강진·해남에 직접 파견하여 시가대로 값을 정해 송상에게서 넘겨받게 해 달라고 청원하였다.⁵²⁾ 이는 송상이 물화의 반입 길목인 강진·해남 단계에서 제주산 양태를 선점·매점한 뒤, 한양 시전을 거치지 않고 각지의 지방 시장으로 직접 전매하는 유통 경로를 취하였음을 뜻한다.

나아가 1827년(순조 27)에는 송상이 매점한 양태의 산매(散賣)가 그 근거지인 개성과 경기 남부의 상업 거점 안성(安城) 등지로 확산되었다. 양대전 측은 이들 지역에 대한 수세를 요구하였으나, 조정에서는 “송도와 안성은 강진·해남과 같은 길목이 아니며, 산매하는 곳마다 수세하면 상민이 소요할 폐단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물리쳤다.⁵³⁾ 이는 시전 중심의 도고 특권이 약화되고, 사상 자본에 의한 상품 유통이 관행화되던 당대

51) 『정조실록』 정조 15년(1791) 1월 7일조; 『비변사등록』 정조 15년(1791) 1월 7일조.

52) 『순조실록』 순조 10년(1810) 1월 10일조.

53) 『순조실록』 순조 27년(1827) 1월 13일조.

목록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핵심 교역 물종으로 확인된다. 이에 문정별단이 수록된 사료 가운데 제주 양태 교역 사항이 담긴 주요 사례를 선별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표류 기록에 나타난 제주 양태 교역 사례

번호	출항일 표착일 송환일	표류인	출항지	목적지	표착지	출항목적	출전
1	1699.11.01. 1699.11.11. 1700.07.08	허태즙 등 44명 (제주인42, 서울인1, 장흥인1)	제주	나주	일본 薩摩州 諏訪縣	굴 진상 및 구황용 미곡 구입 등	『표인영래등록』 1700년 7월 21일
2	1704.01.09. 1704.01.27. 1704.07.18.	안세량 등 39명 중 37명 생존 [사망1, 실종1]	제주	해남	일본 薩摩 永良部島	당유자 진상 및 잡물 무역, 추노 등	『표인영래등록』 1704년 7월 3일
3	1758.01.03. 1758.01.13. 1758.9월경	김응택 등 41명 중 40명 생존 [병사1] (제주인25, 개성인1, 서울인4, 나주인1, 진도인1, 원주인1, 청안인4, 보은인4)	제주	육지 (미상)	대만	양태 무역 및 진상, 정배인 압송 등	『비변사등록』 1758년 9월 21일
4	1761.08.06. 1761.08.17. 1762.4월경	김중경 등 7명	임피현	제주	중국	양태, 말총 등 판매를 통한 겉보리 등 구매 후 귀향	『비변사등록』 1762년 4월 15일
5	1765.02.14. 1765.02.27. 1765.9월경	김순창 등 9명 중 8명 생존 [병사1]	제주목	별방진	중국 福建省 福寧府	취리미로 미역 구매	『비변사등록』 1765년 9월 4일

번호	출항일 표착일 송환일	표류인	출항지	목적지	표착지	출항목적	출전
6	1770.01.28. 1770.05.05. 1770.8월경	현영발 등 34명 중 13명 생존 [사망21]	영암 이진	제주	일본 腹州 興津浦	양태 등 판매를 통한 미곡 구매 후 귀향 및 대정현감 부임	『전객사일기』 1770년 8월 16일
7	1771.09.16. 1771.09.24. 1774.4월경	김창석 등 14명	제주	경강	일본 肥前州	대정현 진상·상납물과 이전곡 대가 물품(양태 등)을 중앙 및 전라감영 납부를 위한 관영 운송	『전객사일기』 1772년 5월 2일
8	1771.11.16. 1771.11.21. 1772.4월경	홍계석 등 11명	제주	임피현	일본 五島	이전곡 대가로 양태 납부·교역 및 사적인 양태·미역 판매	『전객사일기』 1772년 5월 2일
9	1779.12.01. 1779.12.11. 1780.7월경	신진창 등 30명 중 29명 생존 [사망1] (제주人28, 충청 홍주목人1, 전라 순천부人1)	제주	강진	일본 筑前州 新宮浦	양태 등 판매를 통한 미곡 구매 및 신임 제주관관 맞이	『전객사일기』 1780년 7월 6일
10	1780.01.17. 1780.01.25. 1780.6월경	김영청 등 27명 (제주人21, 강진人3, 연기현人1, 공산현人1, 서울人1)	영암 소안도	제주	일본 肥前州 西平	육지에서 진상·공문 업무와 양태 등 교역 후 귀향 및 육지 상인들의 교역차	『전객사일기』 1780년 7월 8일
11	1785.08.08. 1785.08.19. 1786.1월경	이응춘 등 12명 (제주人11, 강진人1)	영광	제주	중국 江蘇省 松江府	미역·양태 등 판매·교환을 통한 미곡 구매 후 귀향	『비변사등록』 1786년 1월 29일

번호	출항일 표착일 송환일	표류인	출항지	목적지	표착지	출항목적	출전
12	1795.11.10. 1795.11.14. 1796.3월경	김은광 등 24명 (제주인14, 강진인10)	제주	강진	일본 肥前州 五島	양태 등 판매를 통한 미국 구매 및 제주산 양태 매집	『전객사일기』 1796년 3월 27일
13	1795.11.27. 1795.12.05. 1796.5월경	현안발 등 16명 중 15명 생존 [익사1]	제주	영암	일본 薩摩州	양태 등 판매 · 교역	『전객사일기』 1796년 6월 19일
14	1813.03.06. 1813.03.14. 1813.11월경	강종렬 등 23명 중 21명 생존 [병사2] (제주인20, 영암인1, 강진인1, 공주인1)	제주	영암 이진	중국 浙江省 寧波府	양태 등 판매 · 교역	『일성록』 1813년 11월 14일
15	1842.07.27. 1842.08.23. 1843.3월경	고상엽 등 3명 (제주인2, 홍양현인1)	하동	제주	중국 蘇州府	양태 무역 후 귀향	『탐라계록』 1843년 3월 초7일
16	1867.12.02. 1868.03.15. 1868.7월경	김광일 등 21명 중 1명 생존 [아사20]	제주	육지 (미상)	중국 廣東省 唐山浦	양태 등 판매를 통한 미국 구매	『제주계록』 1868년 7월 14일
17	1870.03.24. 1870.03.25. 1870.4월경	강명록 등 73명 중 3명 생존 [실종66, 익사4]	제주	육지 (미상)	조선 진도 件邁島	양태 등 판매 · 교역 및 육지 결식	『제주계록』 1870년 4월 26일

자료: 『비변사등록』, 『일성록』, 『표인영래등록』, 『전객사일기』, 『탐라계록』, 『제주계록』

참조: 이옥, 「18~19세기 중반 제주지역 상품화폐경제 발전과 성격」, 『국학연구』□, 2008, 527~528쪽
 <부표>; 김덕진, 「조선의 상업과 강진」, 『다산과 현대』 8, 2015, 274~280쪽, 김나영, 『조선시대
 제주도 표류·표도 연구』, 제주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348~364쪽을 참고하여 표 작성.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표류 기록에 나타난 제주 양태 교역 사례는 18세기 초~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총 17건이 확인된다. 이들 표류선은 국내 연안을 넘어 일본, 중국, 대만 등 이역 해역까지 밀려갔다가 송환되어 왔다. 송환된 표류인들의 문정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제주

양태 교역의 참여 주체와 교역 목적, 교환 물종과 유통 네트워크 등 18~19세기 제주 경제 실상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에 사료에 나타난 제주 양태 교역의 시기별 특성과 유통 양상을 크게 세 국면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즉, 진상·이전곡과 결부된 관영 운송→강진·영암을 매개로 한 사상 중심의 교역→그리고 19세기 신용 거래(외상)와 생계형 행상으로의 확장이 그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 흐름을 관통하는 교역 주체가 지방 관속(官屬)에서 원거리 재지 사상(私商), 나아가 영세 행상과 결인에 이르기까지 신분적·계층적 저변이 넓어지고, 교역의 공간적 범위 또한 전라 연안 포구에서 경상도 내륙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 갔다는 사실이다. <표 1>에 제시된 사례를 바탕으로, 그 변화 양상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기 전반의 제주 양태 교역은 진상이라는 공무(公務) 및 이전곡 상황과 긴밀히 결부되어 운용되는 경우가 두드러진다. [순번 ①] 1699년(숙종 25) 나주로 향하던 허태즙 일행 44인은 곧 진상과 구황용 미곡 구매를 겸하여 양태·감곽·전복·말안장 등을 싣고 출항하였고, [순번 ②] 1704년(숙종 30) 안세량 일행 역시 당유자 진상과 고마소·예방소의 공사 잡물 교역을 겸하여 감곽 57,000속·군목 28필·전복 35첩·나무빗 130족·모자 20족·녹비 30명과 함께 양태 29족을 본전(本錢)으로 지참하고 있었다. 이때 제주 양태는 주요 진상물이나 관영 무역 물종에 딸린 부수 교역 품목의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양태는 진흥곡을 확보하고, 이전곡을 상환하기 위한 핵심 관영 납부 물종으로 대량 운송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는 앞서 살핀 나리포창 체제의 실상과도 맞닿아 있다. 제주가 이전곡 대가로 양태를 비롯한 물산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만큼, 양태는 곧 진흥 재정을 매개하는 물종으로서 관영 유통망을 따라 육지로 나갔던 것이다. [순번 ④] 1761년(영조 37) 김중경 일행은 흉작으로 인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관목(官木)과 미역을 양태·말총 등과 환매한 뒤, 나리포창에서 다시 겔보리 70석·사기 150족·백목 3필 등으로 바꾸고 이전 백미 50석을 수령하여 귀환하던 중 표류하였으며, [순번 ⑤] 1765년(영조 41)

김순창 일행 역시 나리포에 양태 등을 납부하고 이전미 100석과 취리미 35석을 받아 돌아온 사례 역시 나리포창을 결절점으로 한 양태·곡물의 순환을 보여준다. 도내 흉년에 대응하여 미곡을 확보하는 일이 이 시기 양태 교역의 핵심 동인이었던 셈이다. 나아가 [순번 ⑦] 1771년(영조 47) 대정현의 사공·격군과 진상색리 등 14인은 중앙 각사 및 전라감영에 납부할 진상물과 이전곡 대가로 양태 370립·미역 6,284속 등을 신고 경강(京江)으로 향하다 표류하였다. 특히 [순번 ⑧] 같은 해 임피현으로 향하던 홍계석 일행 11인은 이전곡 대가에 해당하는 양태 19고리(古里)·감곽 200속·청곽 30석 외에 사적으로 ‘흥판(興販)’할 양태 50죽을 함께 적재하고 있었다. 이는 관영 운송의 틀 안에서 사적인 양태 상업 활동이 활발히 병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18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제주 양태는 강진·영암 등 남해안 포구를 1차 집산지로 삼아 민간 상인 간의 자율적인 교역을 통해 육지로 대량 반출되었다. 그 전환의 조짐은 이미 18세기 중엽부터 나타나는데, 우선 [순번 ③] 1758년(영조 34)의 표류 사례에서 개성상인 김웅택과 서울·원주의 상인, 그리고 제주의 양태 행상 8인이 제주 진상선에 함께 동승하고 있었던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즉, 개성·서울·원주 등지의 원거리 상인이 집산지 매입에 그치지 않고 직접 제주에 입도하여 양태를 매집함은 물론, 제주의 영세 상인 또한 같은 배로 육지 판로 개척에 나섰다. 이는 뒤에서 다룰 유통망 경쟁의 인적 기반이 이미 18세기 중엽의 바닷길 위에 형성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후 [순번 ⑥] 1769년(영조 45) 제주 사상 현영발 일행은 양태 50죽·전복 5첩·총모자 12립을 신고 영암 이진에 내다 팔아 그 대금으로 쌀 40석을 구입하였고, [순번 ⑨] 1779년(정조 3) 신임 판관의 신영선(新迎船)은 제주목 중면 별도리의 양인 신진창이 선주로 있던 균역청 소속 선박으로, 신영하인 등 공무 수행 인원과 함께 여러 사적 교역 물품도 실려 있었다. 사공 허재완은 양태 200죽과 말총 40근 등을 육지의 목면·잡물과 교환하고자 하였고, 이방 김태환은 신영하인(新迎下人)의 왕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양태 270죽과 전복·나무빛·탕건·미역 등을 실었다. 육지 상인들

역시 이 배를 이용하였는데, 충청도 홍주목의 이득우는 전(錢) 80냥으로 강진에서 무명 40필을 사들인 뒤 제주로 들어와 양태와 잡물을 매입하였고, 전라도 순천부의 박필보는 백목 50필을 가지고 입도하여 양태 40족과 말총 20근을 사들였다. 이처럼 신진창의 선박은 공무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운송 수단인 동시에, 제주와 육지를 오가는 양태 등 사적 교역 물품의 운송에도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순번 ⑩] 1780년(정조 4) 제주로 돌아온 김영청의 배는 본래 사격 7명이 탄 진상 감굴 운반선으로, 육지에 진상품을 내린 뒤 귀로에서 여러 상인을 태워 사적 교역선으로 전용된 경우였다. 이 배에서 확인되는 제주 상인들의 물종 교환 내역을 보면, 김연대는 양태[원문 明臺] 50개(介)를 백목 20필로, 이광수는 양태 80족을 백목 1동(同)으로, 고계삼은 양태 50족과 수말 2필을 백목 45필로, 고익관 등 4인은 양태 400족을 백목 2동 및 담배 3동으로 각각 교환하였다. 이 한 척의 선박에서 확인되는 양태만도 580족 이상에 달하는데, 이는 양태가 육지의 백목·담배와 직접 맞바꾸어지는 물물교환 형태를 취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 배에는 강진 상인 심득사 등과 충청 연기·공산 상인들이 백목·마포·담배를 싣고 제주로 들어가기 위해 동승한 정황도 확인된다. 이렇듯 해당 사례는 제주 상인의 양태 반출과 육지 상인의 제주 입도 교역이 한 선박에서 결합된 ‘쌍방향 민간 교역선’의 구조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18세기 후반의 여러 교역 사례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다. [순번 ⑪] 1785년(정조 9) 별도포 주민 이응춘 일행과 강진 상인 박직건이 흉년으로 부족한 곡물을 확보하기 위해 양태 2,500립·미역 1,200속·전복·오징어 등을 영광 논조포로 가지고 가 대맥 260석·백미 40석 및 생활물자로 교환하였다. 또한 [순번 ⑫] 1795년(정조 19) 강진으로 향하던 김은광의 배에서는 제주민이 양태·미역·말린 상어 등의 육지 판매를 통한 미곡 확보 교역과, 강진 상인의 백목·백미·누룩·담배 등을 제주에 반입해 양태 등을 매집하려는 상업 활동이 한 배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이 사례는 제주의 곡물 부족을 육지 물산으로 매우려는 제주 측의 생존적 필요와 전국적 수요를 지닌 갖 재료를 매집하려는 육지 상

인의 이해가 긴밀히 맞물려 작동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나아가 [순번 ⑬] 현안발 등 일행 16명이 양태 100족 및 제주 물산을 영암으로 건너가 판매하려 했던 행상 사례나, [순번 ⑭] 제주인 강종렬 등 20명과 육지 상인 3인(영암 윤경완, 강진 송영필, 공주 원일삼) 등 총 23명이 사마(私馬) 43필, 양태 40족, 미역 400속, 나무빚 20통을 싣고 영암군 이진으로 출항한 사례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은 제주에서 확보한 말과 양태, 해산물 및 수공업품을 육지로 반출하여 판매·교역하기 위해 출항한 것으로, 제주-육지 간 민간 유통망의 다변화와 복합적인 상업 결합 양상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셋째, 19세기에 이르면 양태 교역의 공간적 범위가 경상도 일대로까지 확장되고, 외상을 매개로 한 신용거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순번 ⑮] 1842년(헌종 8) 하동에서 제주로 향하던 고상엽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앞서 1837년(헌종 3) 가을 양태를 싣고 영남으로 건너가 외상으로 판매한 뒤 여러 해에 걸쳐 대금을 분할 회수하였으며, 1842년에는 그 대금으로 황죽·백목·사기 등을 매입하여 제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이는 ‘제주 양태의 영남 반출 및 외상 판매→다년간의 대금 회수→육지 물화 구입 및 제주 반입’으로 이어지는 장거리 순환 교역의 전형을 보여준다. 외상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축적된 상호 신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상엽은 적어도 1837년 이전부터 영남 지역의 상인 및 수요층과 두터운 거래망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18세기 후반 단순 물물교환이나 현물 결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양태 교역은 19세기 전반에 이르러 대금 결제의 시차를 용인하는 고도화된 신용거래 체계로까지 발전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9세기 후반의 사례들은 양태 교역이 기층 제주민의 생계형 행상 영역으로까지 저변을 넓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순번 ⑯] 1867년(고종 4) 연이은 흉년 속에서 제주 사상 김광일 등과 걸인을 포함한 21인은 양태·미역·어물·전복 등을 육지에 내다 팔아 쌀을 구하고자 화북포를 출항하였다가 표류하여 20명이 사망하였다. 이어 [순번 ⑰] 1870년(고종 7)에도 제주 각지의 행상과 걸인 등 73인이 양태와 목소(木梳) 등을 싣고

별도포에서 출항하였다가 표류하여 단 3명만이 생존하는 참변을 겪었다. 이러한 일련의 표류 사건들은 흉년과 기근이라는 한계 상황 속에서, 양태를 비롯한 제주 물산이 영세 민간 선박을 통해 식량 확보를 목적으로 육지에 끊임없이 반출되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실증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정별단』 등 표류 기록에 나타난 제주 양태 교역의 실상은 단순한 해난사고의 편린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18~19세기 제주민들이 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양태를 매개로 육지부 유통망과 긴밀히 결합하여 전개한 능동적인 생존 전략이자, 자생적 해상 교역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처럼 제주 양태는 진흥 재정 마련 및 이전곡 상황을 위한 관영 납부 물종의 성격에서 출발하여, 점차 강진·영암 등 남해안 포구를 거쳐 한양과 전국 시장으로 이어지는 광역 유통망의 핵심 교역품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나아가 19세기에는 영남 지역에까지 이르는 장거리 신용거래의 대상으로 그 공간적·구조적 지평을 확장해 나갔다. 이러한 확산은 갖의 핵심 재료로서 양태가 지닌 전국적인 상품성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곡물 자급이 불가능했던 제주 사회에서 미곡을 확보하고 구황을 도모하는 결정적인 환화 수단으로 기능했음을 말해준다.

4. 제주 양태 생산·유통 구조의 변화와 위기

4.1. 도고(都賈)의 성장과 양태 유통 구조의 재편

19세기 제주 양태 유통 구조의 변동을 가져온 핵심 동인은 도고 상업의 급속한 성장이었다. 1791년(정조 15) 신헤통공(辛亥通公)으로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이 혁파되면서, 종래 시전상인과 난전상인 간의 제도적 대립 구도는 실질적으로 해체되었다. 이로써 상업 경쟁의 방향은 국가가 부여한 특권이 아니라, 자본력과 유통망 장악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 질서로 재편되었다.

이에 사상 자본에 기반한 도고 상업은 한양과 삼남 지방의 포구 및 장시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도고 상인들은 물화의 한양 반입 길목에서의 매집을 넘어, 지방의 생산지와 연안 집산지까지 직접 진출하여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가격 구조를 자의적으로 통제하기에 이르렀다.⁵⁵⁾ 매입과 판매의 시차와 지역차를 이용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賈賤賣貴] 유통 차익 도모와 물류 요충지에서의 전매권(專賣權) 선점은 이 시기 사상 자본의 전형적인 영리 추구 방식이었다.

제주 양태는 신해통공 이후 도고 상업의 확대와 유통 구조의 재편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물종이었다. 육의전에 속하지 않았던 양대전은 통공 이후 금난전권에 따른 보호를 상실하여 자유 경쟁에 노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우세한 자본력과 광범위한 상업망을 갖춘 개성상인[송상]의 도고 활동이 두드러졌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10년(순조 10) 양대전 상인들은 송상이 제주 양태가 육지로 반출되는 주요 길목인 강진·해남 등지에서 물량을 대량 매점한 뒤, 이를 한양의 양대전을 거치지 않고 각처의 도회(都會)로 직접 파송하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이로 인해 한양 유입 물량이 급감하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양대전은 송상의 도고 금지와 함께 현지 시가(市價) 매입권을 요청하였다. 비변사 또한 송상의 이권 독점이 양대전에 미치는 폐단을 인정하고, 해당 관아에 관문(關文)을 발송하여 이를 금단하도록 조치하였다.⁵⁶⁾

그러나 이후 송상의 양태 도고는 강진·해남과 같은 제주 물산의 반입 길목에 국한되지 않고, 송도와 안성을 비롯한 내륙 주요 상업 거점으로서까지 확대되었다. 1827년(순조 27) 공시인(貢市人) 폐막(弊廢) 조사 당시 양대전 상인들은 “송도와 안성 등지에서 송상의 도고 폐단이 근래 더욱 심해졌다”고 진정하며, 1810년의 전례에 따른 단속과 해당 지역에서의 수세권(收稅權) 부여를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비변사는 송도와 안성이 물류 요로(要路)인 강진·해남과는 유통상 입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세 요구를 기각하였다.⁵⁷⁾ 즉, 가격 조종의 폐단이 드러난 도고 행위 자체는

55) 변광석, 『조선후기 시전상인 연구』, 해안, 2001, 219쪽.

56) 『비변사등록』 순조 10년(1810) 1월 10일조.

금단 대상이나, 내륙 각지에서 이루어지는 산매 단계에까지 시전이 개입하여 수세하는 것은 상민에게 새로운 폐단을 초래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응의 차이는 제주 양태 유통망이 광역화되는 과정에서 양대전 상의 상업적 통제력이 미치는 공간적 한계를 시사한다. 즉, 조선 조정이 공인한 관문인 강진·해남에서의 매점 행위는 도고의 폐단으로 규제될 수 있었던 반면, 물화가 내륙 시장으로 유입·분산된 이후에는 일상적 산매와 독점적 도고의 경계가 모호해져, 결국 해당 유통 단계까지 시전의 기득권적 영업망과 수세권을 확장하려는 요구는 국가 차원의 통제 명분을 얻지 못했던 것이다.

요컨대 신흥통공 이후 제주 양태 유통은 강진·해남을 기점으로 내륙 가공 거점 및 소비지로 연계되는 광역적 분업 체계를 형성해 나갔다. 특히 안성은 송상이 공급하는 제주산 반제품 양태인 ‘제양(濟涼)’을 조달받아 완제품 갓[黑笠]을 생산하는 입점(笠店) 가공업의 전국적 거점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전국 주요 거점에 송방(松房)을 설치하여 물류를 통제하던 송상은 생산지 반출의 첫 기착지인 강진·해남과 한양 반입 관문이자 가공 거점인 안성, 그리고 본거지인 개성을 잇는 입체적 유통망을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차 집산지에서의 ‘원가 우위’와 ‘유통망 선점’이라는 이점을 양태 교역 구조 속에서 관철해 갔다.

반면, 유통 통제력을 회복하려던 양대전의 시도는 제주 상인과 한양 입장(笠匠) 간의 직거래를 저지하는 양상으로 구체화되었다. 1830년(순조 30) 양대전 상인들은 제주 저인(邸人)⁵⁸⁾과 상고(商賈)가 한양의 입장(笠匠)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비변사는 “통공에 따른 매매는 백성의 생업과 직결된다”는 원칙을 들어 이를 기각하였다.⁵⁹⁾ 이후 조정은 장기 체류를 통한 물량 도집(都集)이나 잠매(潛賣) 등

57) 『비변사등록』 순조 27년(1827) 1월 13일조.

58) 제주 저인(邸人)이란 제주도와 육지(특히 한양) 간의 교역 및 인적 교류 과정에서 제주 상인이나 주민들의 상경 시 숙식과 물품 보관을 제공하고, 제주산 물화의 위탁 판매 및 거래를 중개하던 경저(京邸, 또는 제주저)의 주인이자 전문 상업 중개인(객주·여각 성격의 상인)을 의미함.

명백한 독점 행위만을 선별 단속하며, 일반 상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였다. 결국 배타적 유통권을 고수하려던 양대전의 시도는 국가의 통공 및 민업(民業) 보호 기조에 의해 제한되었다. 그 결과 제주 양태 유통은 시전 중심의 단선적 통제에서 탈피하여 다원화된 민간 거래망으로 확대되어 갔다.

하지만 유통 지배권의 이동이 낳은 구조적 손실과 부담은 궁극적으로 유통 단계의 최하층에 놓인 생산지 제주로 전가되었다. 제주목사 이원조가 저술한 『탐라십요』의 ‘직량(織涼)’은 상업 자본의 침탈과 소비시장의 변화 속에서 제주 가계의 생산 노동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생생히 증언한다.⁶⁰⁾ 해당 시는 제주 가계의 고단한 가내수공업 노동과 육지부 유통 자본에 의한 잉여 수탈, 그리고 소비 유행의 변동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초래한 생산 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다각도로 보여준다. 첫째, 제주 전역의 가구마다 양죽 틀을 갖추고 온종일 작업해야 하루 한 개를 겨우 제작할 수 있을 만큼, 양태 생산은 고도의 숙련도와 막대한 노동 투입을 요구하는 생계 수단이었다. 둘째, 이렇게 제작된 양태를 정기적으로 상선을 통해 육지로 출하되었음에도 한양 양대전과 개성상인 등 육지 도고 자본의 험값 매수·대금 지급 지연·난전 모함 등으로 인해 제주 상인들은 채무만 떠안은 채 귀항해야 했다. 셋째, 양태 판매 대금으로 환곡과 조세를 상환해야 했던 제주민들은 유통 단계에서의 수탈로 인해 공납과 세납의 경로가 차단되면서 극심한 부채와 식량난에 직면하였다. 나아가 제주 생산층이 공들여 제작한 정밀한 고급 양태(“가늘고 고운 것”)가 육지부의 유행 변동(“성긴 통영갓”)과 유통 자본의 가격 왜곡 속에서 판로를 잃고 외면당하는 이율배반적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한편, 19세기 전반 송상 등 거대 도고 자본에 밀려 시장 지배력을 상실해 가던 양대전 상인들은 자신들보다 거래상 약자인 제주 상인들을 압박·수탈함으로써 빼앗긴 이윤을 보전하려 하였다. 1849년(헌종 15) 제주목사 장인식이 비변사에 올린 관보(關報)에는 특권 시전상인들의

59) 『비변사등록』 순조 30년(1830) 1월 13일조.

60) 이원조, 『탐라록』 헌종 9년(1843) 1월 16일조, 「탐라십요」 제8수 직량(織涼).

자본적 수탈로 인해 도내 경제가 마비되어 가던 절박한 실상을 다음 E)와 같이 구체적으로 전한다.

E) ... 가까이는 수년 이래로부터 이른바 제주 상인들이 양태를 가지고 서울에 들어가 방매하고자 하면, 시전상인들이 전에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난전이라 칭하며 마음대로 조롱하였습니다. 곧 도고와 같이 현장에서의 폐해는 싼 값이 주가 되고, 큰물이 하늘을 업신여기는 욕심은 각리(權利, 이익을 독점함)에서 나왔으며, 여러 해가 지나도 값을 미루어 갚지 않았습니다. 제주 상인들은 돌아올 기일이 아득하고 객지에서 드는 비용이 허다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배에 가득 싣고 나가지만 끝내는 전대를 드리우고 돌아옵니다. 화천(貨泉)이 막히고, 교역할 물건이 없습니다. ... 유독 이 먼 지방의 사정은 정조의 고사(故事)를 건의하여, 시전상인들을 엄중히 계책하여 함부로 금하지 말게 하고, 이 제주 상인들로 하여금 오직 뜻대로 사고팔며, 쌀을 바꾸고 베를 바꾸어서 속히 가고 속히 오면, 제주도민에게 있어 어렵고 부족할 근심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일에 있어서도 그 무궁한 폐해를 방지하도록 비변사에서 참작하여 처분하실 일입니다.⁶¹⁾

위 첩보는 시전상인들이 특권적 권력을 자의적으로 악용하여 상경한 제주 상인을 ‘난전’으로 모함한 뒤, 양태 가격을 정당한 시세 이하로 강제 매하(賈下)하고 대금 지급을 무기한 연체하는 배타적 독점 수탈을 단행했음을 증언한다. 제주 상인들은 한양 체류 비용만 소진한 채 “처음에는 배에 가득 싣고 나가지만, 끝내는 빈 전대를 늘어뜨리고 돌아오는” 불평등한 수탈 교역을 강요받았다. 이로 인해 도내에서는 화폐와 물화의 순환이 단절되는 ‘화천알색(貨泉閑塞)’과 ‘교역무물(交易無物)’의 고립 위기에 직면하였다. 특히 장인식 목사가 제주 상인의 자유로운 매매를 보장했던 정조대의 전례들 들어 시전의 침탈을 엄금해 줄 것을 청원하면서, 이 폐단을 바로잡지 못할 경우 온 섬(제주)의 백성이 “학철지어(涸轍之魚, 수레바퀴 자국에 갇힌 웅덩이에 갇힌 물고기)”의 처지로 전락할 것이라 호

61) 『제주목관첩』 현종 15년(1849) 1월 4일조.

소한 사실은 양태 판로의 붕괴가 곧, 제주 사회 전체의 존립 문제로 직결되어 있었음을 방증한다.

요컨대 19세기 전반 제주 양태의 유통 구조 재편은, 송상 등 도고 자본의 유통 상류(집산지와 반입 길목) 장악과 시장 지배력을 상실한 시전이 그 손실을 생산지인 제주에 전가하는 ‘이중의 압박 구조’가 고착화되어 간 과정이었다. 그 결과 가격 결정권과 판로를 잃은 제주는 교역을 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에 직면했고, 도내 물화의 순환마저 정체되었다. 이 같은 유통상의 왜곡은 이후 원료 고갈과 통영 양태의 성장이라는 대외적 요인과 맞물리며, 제주 양태 수공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로 심화되었다.

4.2. 통영·김제 양태의 부상과 제주 양태의 생산 위기

19세기 전반 유통 구조의 재편이 제주 양태의 판로를 압박하는 외적 요인이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원료 고갈과 대체 산지의 부상이라는 생산 기반의 내적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었다. 즉, 자생 원료인 전죽(箭竹/涼竹)의 고갈과 경쟁 산지인 통영 양태의 성장은 앞 절에서 논의한 시전의 침탈에 따른 판매 부진과 맞물리면서 현종·철종 연간 제주 양태 수공업 전반을 구조적 위기로 몰아갔다.

양태는 대오리[竹紵]를 실처럼 가늘게 켜서 결는 수공업이었으므로, 그 성패는 무엇보다 양질의 대나무 확보에 달려있었다. 제주에는 양태 제조에 쓰여 ‘양죽(涼竹)’이라 불린 왕대가 자생하였고, 여기에 담양·진주·하동 등지에서 나는 분죽(粉竹)이 배편으로 반입되어 원료를 보충하였다.⁶²⁾ 전죽은 본래 화살의 재료로서 국가의 관리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는 여자·암소·말·목물(木物) 등과 함께 도외 반출이 금지된 물종이었다.⁶³⁾ 현종 연간 그 금제는 관권과 결탁한 상업 자본에 의해 정면으로 무너졌다. 1837년(현종 3) 개성상인들은 막대한 곡물과 백목을 제주민에게 지급하고, 도민을 부려 섬 전역의 전죽을 잘라 배로 실어 내

62) 장경희, 『조선시대 관모공예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4, 322쪽.

63) 이원조, 『탐라지초본』 권3, 제주, 구례조(舊例條), 선금(船禁).

어 도처에서 산매하였는데, 그 규모가 “양태가 폐업하기에 이를 정도”였다. 이는 축재에 눈이 먼 제주목사 조우석과의 결탁이 있었기에 가능할 것이었다. 비변사는 조우석을 파출하고 나문(拿問)할 것을 청하였다.⁶⁴⁾ 이처럼 생산지까지 진출한 도고 자본이 이번에는 완제품이 아니라 원료 자체를 매집·반출해 감으로써, 제주는 자생 산업의 물적 기반을 잠식당한 것이다. 1841년(헌종 7) 제주목사 이원조가 “양죽의 이권을 빼앗겨 육지 배가 드물게 들어오고, 어곽에서 생업을 잃어 해호(海戶)가 많이 줄었다”고 비변사에 보고한 데서 보듯,⁶⁵⁾ 원료 반출과 판로 두절은 상호 맞물리며 도민 경제를 크게 위협했다.

한편, 제주 양태를 위협한 또 다른 요인은 육지부 경쟁 산지의 성장이었다. 그런데 이 경쟁은 전혀 새로운 상대가 아니라, 정조대에 한 차례 시장에서 밀려났던 산지가 다시 진입하는 형태였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했다.

앞서 보았듯 정조 연간 육지 최대 산지였던 김제의 양태 직조를 금지[防禁]함으로써 제주 양태는 독점적 지위를 얻었던 바,⁶⁶⁾ 해당 조치는 제주 양태 생산이 활기를 띠는 제도적 기반이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김제는 다시 갯의 산지로 거론되기 시작했으며⁶⁷⁾, 성호 이익이 일찍이 “김제의 것이 으뜸이고, 제주의 것이 다음”이라 평했던⁶⁸⁾ 품질 우위 또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정조대의 보호책으로 얻은 독점은 자생적 경쟁력이 아니라 국가의 금령에 기댄 것이었으므로, 규제가 느슨해지자마자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던 셈이다.

64) 『비변사등록』 헌종 3년(1837) 10월 5일조.

65) 이원조, 『탐영관보록』 헌종 7년(1841) 10월 29일조.

66) 이원조, 『탐영관보록』 헌종 7년(1841) 11월 6일조.

67) 『제주목관첩』 헌종 15년(1849) 정월 4일조.

68) 이익, 『성호사설』 권8, 인사문(人事門), 생재(生材)조, 「... 전라도에는 대밭[竹田]이 많으므로 강죽(扛竹, 깃발을 다는 장대)·전죽(箭竹, 화살을 만드는 대)·죽선(竹扇) 등을 공물로 바친다. ... 우리나라 사람은 반드시 대가 있는 삿갓을 쓴다. 대를 엮어 대를 만드는데, 김제 것이 으뜸이고 제주 것이 다음이다. ... 행상(行商)을 좋아하는 풍속이 있기 때문에, 제주 가까이 갈수록 말 값이 도리어 비싸다.」

이러한 시장의 흔들림을 결정적 국면으로 이끈 것은 통영의 등장이었다. 1604년 삼도수군통제영이 설치된 이래 12공방을 중심으로 수공업은 육성해 온 통영은, 6칸 규모에 편수 1명과 장인 26명을 둔 입자방(笠子房)을 통해 관영 체제하에서 갓 제조 기술을 전승하고 있었다.⁶⁹⁾ 갓 제조가 총모자장·양태장·입자장으로 분업화된 구조에서 제주가 반제품인 총모자와 양태의 공급지였다면, 통영은 이를 조립하여 완제품을 완성하는 입자(笠子) 공정의 거점이었다. 즉, 통영은 고도의 조립 기술을 축적한 토대 위에서 양태의 자체 생산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19세기 초반까지 통영산 양태는 시장 상품이라기보다 관수품(官需品)의 성격이 강했다. 1827년(순조 27) 무렵까지도 서울에서의 상업적 유통은 거의 없었으며, 상의원(尙衣院)의 궁중 소요품이나 어립(御笠)용 양태로 주로 쓰였을 뿐이었다.⁷⁰⁾ 그러나 철종대에 이르러 관영 공방에서 훈련된 장인들이 사장(私匠)으로 전환하면서 통영은 숙련 기술과 체계적 분업에 기반한 민간 갓 수공업 중심지로 급성장⁷¹⁾했고, 결국 제주 양태의 시장 독점 구조를 뒤흔들었다.

서유구는 『임원경제지』에서 팔도 갓의 9할이 제주산 양태를 쓴다고 기록하여 여전히 제주산의 압도적 비중을 전하면서도, 통영산은 비록 고가였으나 제주산을 월등히 앞선다고 평가하였다.⁷²⁾ 제주의 양태 생산은 민가의 가내 부업 노동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 집약과 고급화 측면에서

69) 통영시청, 『통영시지』 2권, 2018, 377쪽.

70) 『비변사등록』 순조 27년(1827) 1월 13일조.

71) 통영이 갓 수공업의 민간 중심지로 급성장한 배경에는 원료 조달의 이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갓양태는 가늘게 쪼갠 분죽(粉竹, 솜대)을 재료로 하는데, 그 대표적 산지인 진주·하동 등 서부 경남과 전남 담양이 통영과 지리적으로 멀지 않았던 만큼, 통영은 양태 원료의 수급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72) 서유구, 『임원경제지』 섬용지(贍用志) 권2, 복식지구(服飾之具), 쓰개[冠巾], 갓[笠], 「갓에는 대우[帽]가 있고 양태[簷]가 있는데, 모두 대오리[竹絲]를 엮어서 만들고 베로 짜서 옷칠을 한다. 그 양태는 제주도에서 오는데, 지금은 통영에서 만든 양태가 더욱 좋다. 팔도에서 쓰는 갓 중에 9/10가 모두 제주산이고 통영산은 값이 올라 1/10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을 잘 견디고 질기기로는 제주 양태 셋이 통영 양태 하나를 당할 수 없다.」

통영에 비해 뚜렷한 한계를 안고 있었다. 결국 통영 양태의 부상은 단순한 산지 간 경쟁을 넘어, ‘관영 공방 기반의 전문 분업 체계’와 ‘농가 부업 체계’라는 생산 조직의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결과였다.

여기에 시전상인들의 침탈로 인한 제주산의 판로난까지 겹치면서, 통영산 양태의 판매 우위는 시장 내 지위 역전을 고착화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 앞에서 제주 측이 취한 대응은 국가의 제도적 보호를 청원하는 방식이었다. 1841년(헌종 7) 제주목사 이원조가 비변사에 올린 계목(啓目)은, 당시 제주가 내세운 생존 논리와 수세적 대응 양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F) ... 드디어 아전과 백성들에게 나아가 괴로운 것을 물으니, ... 하나는 내지에서 양태 만드는 것을 못하게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은 오직 ‘양태’ 한 가지일 뿐입니다. ... 그런데 근래에 와서 내지인들이 통영에서 만든 양태 쓰기를 좋아하여 신분이 귀하고 천한이나 지위가 높고 낮은 이 할 것 없이 초목이 바람에 나부끼듯 휩쓸려 널리 유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더욱 심하여 사방에서 이를 따라하고 있으니, 입장이라 불리는 이들 중에 (통영산 양태를) 만들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만들기가 아주 쉽고 파는 것도 어렵지 않아 제주산 양태의 예전과 같이 여린 대나무로 짠 것은 절로 쓰임이 없게 되어 상인들의 왕래가 끊어져 화로(貨路)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제주 백성들은 돌아가는 형세상 어쩔 수가 없어 육지 대나무를 사와 억지로 통영산 양태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이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서 비용이 여간 많이 들지 않고, 손놀림이 평소처럼 능숙하지 못하여 제품 또한 조금은 떨어져 무색하게도 여름날 생선처럼 팔리지 않으니 배에 가득 싣고 갔다가 빈 자루만 늘어뜨리며 돌아옵니다. ... 만약 새로운 조목을 엄히 세우고 옛 제도를 거듭 밝혀 무릇 조정의 전장과 관련하여 융복에 착용하는 명주로 만든 주립 외에 통영산 양태로 전립 만드는 것을 일체 금하고, 통영 한 고을 외에 양태 만드는 것을 예전처럼 엄하게 금한다면 임금께서 섬 백성을 염려하고 사치 풍속을 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두 가지를 얻게 됨에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⁷³⁾

73) 이원조, 『탐라록』 헌종 7년(1841) 4월 28일조.

상기 보고에서 제주목사 이원조가 근거로 삼은 것은, 통영 외 타 지역의 양태 제조를 금했던 옛 법제였다. 이는 생계 수단이 막막한 제주민을 위해 관수품 생산지인 통영만 예외로 두고, 상업적 독점 생산권을 제주에 부여했던 국가적 배려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에 접어들어 육지부 전역에 통영식 양태가 유행하고, 한양의 입장(笠匠)들까지 제작에 뛰어들면서, 섬세하고 얇은 가공을 특징으로 하던 전통 제주 양태는 시장에서 급속히 도태되었다.

위기에 몰린 제주 장인들이 육지 대나무를 비싸게 들여와 통영식을 모방했으나, 이는 제주의 구조적 열세만 심화시켰다. 원자재 조달 불가로 원가는 치솟은 반면, 미숙한 기술 탓에 품질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모방 제품조차 전혀 팔리지 않아 “배에 가득 싣고 나갔다가 빈 자루만 늘어뜨리고 돌아오는” 참담한 실패가 반복되었다. 이에 제주목사 이원조가 요청한 것은 새로운 특권이 아니라, 옛 법을 엄히 세워 기존의 ‘제주·통영 이중 체제’를 복원함으로써 육지부의 난립을 막아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상 도고 자본의 팽창과 민간의 소비 유행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흐름 앞에서, 이러한 복고적 행정 금령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제주 양태 수공업의 구조적 몰락을 막아내지 못했다.

이처럼 제주 산지 보호 정책이 유명무실해지면서 통영뿐만 아니라, 김제까지 다시 경쟁 산지로 부상하는 결과를 낳았다. 1863년(철종 14) 제주안핵검찰리사 이견필이 민란을 수습한 뒤 올린 폐막이정책(弊廢釐整策)의 첫 항목은 다음 G)와 같다.

G) 제주도는 바다로 격리되어 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육지에 의존합니다. 육지 물산과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양태 하나 뿐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밤낮으로 양태를 만들어 쌀과 면포로 바꾸어 추위와 굶주림을 면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영과 김제의 양태가 전국에 널리 퍼진 뒤로 제주도가 이익을 잃게 된 것이 매우 가엾습니다. 그러므로 통영과 김제의 양태를 모두 금지하여** 척박한 땅의 궁핍한 백성들이 그 이익을 전적으로 누리게 한다면, 먼 변방의 백성을 오래 보전하는 방도가 될 것

입니다.⁷⁴⁾

위 이정책에서 정조대에 이미 규제되었던 김제가 통영과 나란히 재차 지목된 사실은, 19세기 중반 제주가 신흥 생산지 ‘통영’과 다시 부상한 기존 산지 ‘김제’ 사이에서 시장 입지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9세기 중반 제주 양태 수공업의 위기는 곧 제주 민생 전반의 심각한 동요와 파파로 직결되었다. 결국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단순한 산업 침체에 머물지 않고, 19세기 중반 제주 사회를 뒤흔든 격렬한 정치·사회적 갈등의 기폭제로 폭발하게 되었다.

4.3. 양태 유통을 둘러싼 갈등과 두 차례 민란

19세기 제주 양태 수공업은 나리포창 체제의 해체, 개성상인과 서울 양대전 간의 도고 경쟁, 원료인 전죽의 무단 수탈과 고갈, 그리고 통영·김제 양태의 성장이 중첩되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였다. 그 결과 생산자인 제주민이 최하층에 놓인 채, 관속(官屬)·향리, 개성상인, 시전상인이 이권을 두고 각축하는 왜곡된 유통 구조가 고착되었다. 이러한 상업적 침탈과 유통 왜곡은 도민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였고, 마침내 1813년(순조 13) ‘양제해 모변’과 1862년(철종 13) ‘임술민란’(일명 강제검의 난)이라는 두 차례의 대규모 사회적 소요로 분출되었다.

이러한 유통 모순이 최초로 표출된 사건이 1813년의 양제해 모변이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18세기 말 제주 교역 구조의 중대한 변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1790년대 조선 정부가 관영 교역 기구인 나리포창을 통한 구휼 대신 민간 교역 활성화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자, 종래 나리포창 교역에 개입하여 부정을 축재하던 제주 관속들은 새로운 민간 상업 이윤을 포식(飽食)하기 위한 독점 기구를 모색하였다. 이 시기 제주 이속(吏屬) 300명이 결성한 ‘상찬계(相贊契)’는 이러한 배경에서 태동하였다.

74) 『일성록』 철종 14년(1863) 6월 2일조.

1790~1791년 결성 당시 이들은 ‘신분이 비천한 도필리(刀筆吏)로서 자 손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음’을 한탄하며 상호 부조와 결속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실질적 목적은 대민 수탈과 상업 이윤의 조직적 사유화에 있었다. 결성 직후인 1794년(정조 18) 대기근을 계기로 관아 재정과 환곡 운영에 깊숙이 침투한 상찬계는 화북포와 조천포 등 주요 포구를 장악하였다. 이들은 육지와 제주를 오가는 상선에 과도한 뇌물과 세금을 강요하며 출항을 통제하였고, 제주 상인이 양태 등을 싣고 출항할 때도 자의적인 수세와 뇌물 갈취를 자행하며 유통망을 사점(私占)하였다.⁷⁵⁾

제주 양태·미역 등 교역 이권을 둘러싼 침탈은 향리층뿐만 아니라, 제주목사와 그 예하 군관 등 최고위 지방관층에서도 관행화되어 있었다. 1814년(순조 14) 양제해 모변의 전말과 제주의 폐단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제주찰리사 이재수의 장계에 따르면, 전전(前前) 목사 이현택은 부정 축재한 재물로 양태와 미역을 대량 매입하여 사적인 교역을 벌이다가 선박 침몰·표류로 발생한 1,800냥의 손실을 담당 이속들에게 떠넘겨 강제 징수하였음을 지적하였다.⁷⁶⁾ 아울러 목사 김수기의 군관 김명기·김노영 등도 진상품 봉발선(封發船)을 자의적으로 통제하며, 마필·조곽·양태 등을 싣고 가 흥판(興販)함으로써 사익을 편취하였다. 이에 이재수는 비위 군관들을 엄벌하여 장물을 징수하는 한편, 직무를 태만히 하여 부하들의 비리와 실정을 방치한 김수기를 파출하고, 두 전·현직 목사의 죄상을 해당 부서로 하여금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조정에 요청하였다.⁷⁷⁾ 이처럼 최고 지방관에서 향리에 이르는 지배층의 가혹한 갈취는 양제해 모변을 촉발한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별감·풍헌을 지낸 향임(鄕任) 출신의 양제해는 상찬계를 중심으로 한 이향(吏鄕) 세력의 교역권 독점과 수탈, 수령의 탐학에 반발하여 소외된 이속과 도민을 규합해 1813년 거사를 꾀하였다. 그러나 거사 직전 심부름꾼 윤광종의 밀고를 받은 상찬계 핵심 세력 김재검이 관가에 무고하면서 사전에 발각되었다.

75) 이강희, 『탐라지방설』 권2, 「상찬계시말(相贊契始末)」.

76) 『일성록』 순조 14년(1814) 3월 22일조.

77) 『일성록』 순조 14년(1814) 윤2월 14일조.

관가는 이를 ‘역모’로 몰아 주동자들을 처형하고, 다수의 도민을 연좌하여 유배에 처하였다. 그러나 1814년(순조 14) 파견된 제주찰리사 이재수의 조사를 통해 무리한 옥사 처결과 이속층의 총체적 비리가 밝혀지면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었다. 그 이면에는 수령의 탐학과 더불어 상찬계로 대표되는 이향 세력이 향권을 장악하고, 포구를 통제하며 양태·미역 등 제주 핵심 물산의 유통 이권을 사점(私占)한 구조적 모순이 자리하고 있었다. 요컨대 이 사건의 본질은 반역이라기보다, 상찬계의 독점적 횡포에 맞서 배제된 향임층의 반발과 도민들의 누적된 불만이 결합되어 분출된 향촌 사회 내부의 권력 다툼이자, 경제적 갈등이었다.⁷⁸⁾

두 번째 소요는 반세기 뒤인 1862년(철종 13) 발생한 제주민란, 곧 ‘강제검의 난’이었다. 이는 삼남 일대를 휩쓴 임술민란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화전민을 비롯한 일반 도민이 부당한 조세 수탈에 저항한 항쟁이었다는 점에서 성격을 달리한다. 특히 봉기 거점이었던 안덕면 무등이왓(동광리) 일대는 양태의 핵심 생산지였으며, 봉기민의 주요 공격 대상 가운데 하나가 양태의 원료 약탈과 유통을 독점하던 세력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양태 생산·유통 구조의 모순과도 직접 맞닿아 있었다.

이러한 양태 생산 기반의 침탈에 맞선 도민들의 저항은 민란 직전인 1862년 3월, ‘전죽(箭竹) 예취(刈取) 소요’라는 전초전으로 가시화되었다. 서울 거주 고판관(高判官)이라는 자가 조정의 「전죽구청관문(箭竹求請關文)」을 가지고 내려와 제주목·대정현·정의현 세 곳의 전죽[양죽]을 베어 가려 하자, 봉개리 출신 김홍채를 비롯한 삼읍민들은 제주목 동헌에 난입하여 관권과 결탁한 고판관의 약탈 행위를 규탄하고 강력히 저항하였다. 이는 양태 생산 재원을 수호하려는 도민들의 생존권 투쟁이자, 가을에 발발하게 될 대규모 민란의 결정적 도화선이 되었다.

본격적인 봉기는 그해 9~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개되었다. 9월 1차 봉기는 화전세 감세 약속 번복에 맞선 3읍의 연대 투쟁으로 발전한 데 이어, 10월의 2차 봉기는 탐학한 이서(吏胥) 5인의 처단을 요구하는

78) 『비변사등록』 순조 14년(1814) 5월 28일조.

동시에, 조천 등지에서 미역·양태를 독점하여 이익을 취해 온 포구 주인과 토호,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육지 상인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조천리의 토호 김정희의 가옥이 방화되었고, 제주와 서귀포에서는 10여 년간 제주의 미역과 양축을 헐값에 매집해 온 충청도 평택 상인 배운서·박현보의 상선이 습격당해 선적 물화가 탈취되었다. 이처럼 2차 봉기의 공격 대상이 수령·이서뿐 아니라 육지 상인과 포구 주인, 토호로 확장되었다는 사실은, 지배층 내부의 갈등에 머물렀던 50년 전 양제해 모변과 달리, 생산자인 기층 도민들이 유통 독점 세력에 직접 맞선 구조적 저항이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관아의 탄압에 맞서 11월에 일어난 3차 봉기에서는 제주성을 점령해 부정 이서 김종주 등을 처단하고, 각종 폐단의 시정을 담은 이른바 ‘민폐시정규칙(구폐절목)’을 작성하는 등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1863년 1월 신임 제주목사 정기원의 기습으로, 주동자인 강제검과 김홍채가 체포되어 2월 2일 관덕정에서 효수되면서 세 차례에 걸친 항쟁은 최종 진압되었다.⁷⁹⁾ 비록 봉기는 막을 내렸으나, 그 사후 수습 과정은 양태 유통 모순의 구조적 심각성을 다시금 명확히 확인시켜 주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안핵검찰리사 이진필은 제주민의 절대적 생업인 제주 양태를 구제하기 위해 통영·김제산 양태의 유통 금지를 조정에 강력히 건의하였다.⁸⁰⁾ 그러나 비변사는 해당 지역 생산자 보호를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제주 산지 보호책은 끝내 무산되었다.⁸¹⁾ 봉기 수습책의 제1과제로 양태 유통의 보호가 제기되었음에도 지역 간 이해 상충으로 좌절되었다는 사실은, 이 갈등이 단순한 수령·아전의 수탈을 넘어 전국적 시장 경쟁이라는 구조적 차원에 닿아 있었음을 입증한다.

다시 말해 1813년 양제해 모변이 상찬계의 교역 이권 독점에 맞선 향촌

79) 1863년(철종 14) 제주안핵검찰리사로 파견된 이진필은 4월 제주에 도착해 1862년 제주민란의 전말을 조사하고, 주모자급 11명을 정배하는 한편 관련 관속과 전 목사 임헌대를 처벌하였다. 이러한 조사 내용은 관련자들의 공초와 함께 『제주목안핵장계등록(濟州牧安核狀啓謄錄)』에 수록되어 있다.

80) 『승정원일기』 철종 14년(1863) 6월 2일조.

81) 『비변사등록』 철종 14년(1863) 6월 22일조.

지배층 내부의 갈등이었다면, 1862년 제주민란은 원료 약탈과 유통 독점, 그리고 통영산 양태와의 시장 경쟁 압박을 견디지 못한 기층 생산자층과 도민들의 누적된 저항이 전면적으로 폭발한 민중 항쟁이었다.

5. 맺음말

본고는 18~19세기 ‘제주 양태(涼臺)’의 생산·수취·유통 구조가 관영 수취 체제에서 민간 유통망으로, 나아가 도고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 경쟁 구조로 재편되어 간 과정을 통시적으로 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관(官)의 수취 체제와 민간 상업망이 교차·충돌하며 나타난 유통 구조의 변화와 갈등 양상을 규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기 전반 제주 양태는 진휼 재정을 매개하는 핵심 관영 납부 물종으로 채택·운영되었다. 곡물 자급이 어려웠던 제주에서 이전곡의 상황은 주로 현지 산물로 이루어졌는데, 1727년(영조 3) 미역 생산의 격감을 계기로 양태의 대봉(代捧)이 제도화되면서 양태는 어과과 더불어 상환물의 주종으로 부상하였다. 나리포창을 결절점으로 곡물과 물산이 오가는 관영 환매(還買) 체제는 도민이 식량을 공식적으로 확보하는 통로였으나, 관정가(官定價)와 시가의 괴리, 판매 부진에 따른 속읍(屬邑)으로의 강제 판매, 수취·발매 과정에 개재한 중간 관리층의 부정이라는 삼중의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로 인해 나리포창 체제는 점차 유명무실해졌고, 18세기 후반 조정은 민간 상업 유통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선회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양태=제주민의 생업’이라는 인식은 제도적으로 이어져, 제주 양태의 생산과 판매권은 국가적 보호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민간 시장 중심의 유통 구조로 전환해 가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양태의 관영 교역 후퇴를 메운 것은 제주 포구와 남해안을 잇는 민간 해상 유통망의 성장이었다. 영광 칠산해(七山海)의 험난한 해상 조건과 잦은 파선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제주 상선은 도회관·후풍처로

가능하던 강진·해남·영암 일대를 1차 집산지로 적극 활용하였다. 특히 강진 남당포(南塘浦)는 대규모 물화가 집산되는 요충지였다. 남해안 집산지에서 북상한 양태의 최종 소비처는 한양의 양대전이었으나, 19세기에 들어 개성상인이 강진·해남 단계에서 양태를 매점(買占)하여 시전을 거치지 않고 각지로 전매하면서 시전 중심의 유통 체계는 급격한 변용을 맞았다. 18~19세기 표류 기록에 나타난 17건의 사례 분석은 양태 해상 교역의 다층적 진화 양상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18세기 전반 진상과 이전곡 상환 등 관영 운송에 부수되던 양태 교역은, 18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개성·서울 등 원거리 상인의 제주 입도 매점과 제주 영세 상인의 육지 출하가 결합된 ‘쌍방향 민간 교역산’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나아가 19세기 전반에는 경상도 하동 등 영남 일대로 교역 공간이 확장되며 다년간에 걸친 외상 대금 회수라는 신용거래가 정착되었고, 19세기 후반에는 기근 속에서 쌀을 구하기 위해 걸인(乞人)까지 작은 배에 양태를 싣고 바다를 건너는 생계형 행상으로 저변이 확장되었다. 이는 양태 교역이 단순한 상행위를 넘어, 제주민들이 전국적 상품성을 지닌 양태를 매개로 전개한 능동적 생존 전략이었음을 실증한다.

셋째, 19세기에 본격화된 도고(都賈) 상업의 성장과 시장 경쟁은 제주 양태 수공업에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몰고 왔다. 1791년(정조 15) 신해통공 이후 금난전권이 혁파되어 시전 중심의 유통 질서가 해체되자, 우세한 자본력을 지닌 개성상인은 강진·해남 등 반입 길목을 선점·매점하고, 안성의 입점(笠店) 가공업과 개성을 잇는 광역 유통망을 구축하였다. 이에 시장 지배력을 잃어 가던 양대전 상인들은 상경한 제주 상인을 ‘난전’으로 몰아 헐값 매입과 대금 지연을 강요하였고, 이는 도내 경제의 순환 정체로 이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자생 원료인 전죽(箭竹)의 유출과 고갈, 관영 공방의 분업 체계를 갖춘 통영 양태의 시장 잠식과 김제산 양태의 재부상이라는 시장 경쟁의 압박이 중첩되었다. 요컨대 판로·원료·시장 경쟁의 세 위기가 중첩되는 가운데, 가내 부업 노동에 의존하던 제주 양태 수공업은 관영 보호 정책마저 실효를 잃으면서 구조적 쇠퇴에 직면하였다.

넷째, 이러한 제주 양태 구조의 모순과 상업적 침탈은 19세기 두 차례의 사회적 소요로 분출되었다. 1790년대 관영 교역의 퇴조 이후 포구를 장악하여 양태·미역의 유통 이권을 사점(私占)한 향리층의 상찬계(相贊契)와 수령의 탐학은, 향임층과 도민의 누적된 불만과 결합되어 1813년(순조 13) ‘양제해 모변’이라는 향촌 사회 내부의 갈등으로 분출되었다. 반세기 뒤인 1862년(철종 13) 3월의 ‘전죽 예취(刈取) 소요’를 도화선으로 그해 가을 일어난 ‘임술 제주민란’(강제검의 난)은, 화전민을 비롯한 기층 도민들이 조세 수탈에 더하여 양태 원료를 약탈하고 포구 유통을 독점하던 토호 및 육지 상인에 직접 맞선 민중 항쟁이었다. 사후 봉기 수습을 맡은 안핵검찰리사 이건필이 통영·김제산 양태의 유통 금지를 건의했으나 지역 간 이해 상충을 이유로 기각된 사실은, 당시 제주의 위기가 일개 지방관의 비위 차원을 넘어 전국적 시장 질서의 모순에 닿아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 양태’는 진흥 재정의 상환 물종에서 출발하여 전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 유통망의 핵심 상품으로 자리 잡았으나, 19세기에는 도고 자본의 침투와 산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생산 기반의 위기를 맞기에 이르렀다. 이는 관영 상업과 민간 교역, 시전 체제와 사상도고, 도서 지역 생산자와 전국 소비시장이라는 조선후기 상업사의 여러 국면이 하나의 상품에 응축되어 나타난 사례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18~19세기 제주 양태의 역사는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도고 상업의 확대, 전국적 지역 분업 체계의 재편이라는 거시적 변동이 제주라는 생산지에 투영되고 굴절된 과정이었다. 특히 거대 상업 자본의 개입이 생산력 발전을 견인하기는커녕 지역 수공업의 쇠퇴를 초래한 역설은, 지리적 격리와 출륙 통제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직접 생산자인 제주민이 유통 자본에 맞설 최소한의 교섭력조차 확보하지 못했던 현실에 기인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제주 양태’를 매개로, 조선후기 상업사의 구조적 역설이 도서 사회의 생존 투쟁으로 귀결된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전객사일기』, 『표인영래등록』, 『탐라계록』, 『제주계록』, 『제주목관첩』, 『탐영관보록』, 『나리포사실』, 『남사록』, 『남환박물』, 『탐라지초본』, 『탐라록』

<참고논저>

단행본

강만길,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창비, 2018.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상업발전사연구』, ㈜지식산업사, 1998.
고성훈, 『제주도 민란』, 『민란의 시대』, 가람기획, 2000.
권인혁, 『조선시대 화폐유통과 사회경제』, 경인문화사, 2011.
박 범 · 문광균 옮김, 『나리포사실』,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021.
변광석, 『조선후기 시전상인 연구』, 도서출판 해안, 2001.
오 성, 『조선후기 상인연구』, 일조각, 1989.
장경희, 『조선시대 관모공예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4.
현행복, 『탐라직방설: 19세기 제주 ‘양제해 모변사’의 새로운 해석』, 도서출판 각, 2013.

논문

강은정, 「조선후기 나리포창의 설치와 운영」, 제주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권인혁, 「19세기초 양제해의 모변실상과 그 성격」, 『탐라문화』 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88.
권인혁 · 김동전,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 1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98.
김나영, 『조선시대 제주도 표류·표도 연구』, 제주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김덕진, 「조선의 상업과 강진」, 『다산과 현대』 8, 연세대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5.
김진봉, 「철종조의 제주민란에 대하여」, 『사학연구』 21, 한국사학회, 1969.
김태홍, 「18세기 나리포창 발전과 제주로의 곡물 조달」, 『학림』 48, 연세사학연구원, 2021.

- 노혜경·노태협, 「조선 후기 개성상인의 경쟁과 상생」, 『경영사학』 27-2, 한국 경영사학회, 2012.
- 문광균, 「18세기 전라도 나리포창의 운영과 변화」, 『역사와 담론』 90, 호서사학회, 2019.
- 박찬식, 「양제해 모변과 상찬계」, 『탐라문화』 3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8.
- 양진석, 「18, 19세기 제주의 수취제도와 특징」, 『탐라문화』 24, 제주대학교 탐라 문화연구원, 2004.
- 이 욱, 「18~19세기 중반 제주지역 상품화폐경제 발전과 성격」, 『국학연구』 11, 한국 국학진흥원, 2008.
- _____, 「18세기 제주의 진상제와 상품유통」, 『한국사연구』 186, 한국사연구회, 2019.
- 정형지, 「조선후기 교제창의 설치와 운영-18세기 나리포창 사례를 중심으로-」, 『이대사원』 28,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1995.

Abstract

Patterns of Change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tructures of Jeju Yangtae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Kim, Na-young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is study traces,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the process by which the production, collection, and distribution structures of “Jeju Yangtae”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were reorganized from a government-run collection system to a private distribution network, and ultimately to a market-competitive structure dominated by “Dogo” capital.

On Jeju, where grain self-sufficiency was difficult to achieve, Yangtae was adopted as a government-mandated tax commodity to facilitate the repayment of advance grain loans. Follow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Daebong (substitute payment) system in 1727 (the 3rd year of King Yeongjo’s reign), it was collected through a government-run repurchase system centered on the Naripo Granary. However, as this system became largely ineffective due to structural limitations in finance and logistics, the trade in yangtae expanded from the late 18th century onward, centered on a private distribution network that connected the Yangdaejeon market in Hanyang and markets nationwide, with Gangjin and Haenam serving as collection centers.

Meanwhile, by the 19th century, Jeju’s yangtae handicraft industry faced a threefold structural crisis. This was due to the overlapping crises of market access—caused by the monopolistic practices of Kaesong merchants and the shifting of losses onto the market stalls following the Sinhae Trade Opening—a raw material crisis resulting from the outflow and depletion of

the indigenous raw material, arrow bamboo (jeonjuk)—and a market competition crisis stemming from the rise of yangtae production in Tongyeong and Gimje. This complex crisis led to the rapid decline of Jeju's bamboo hat craftsmanship, and the resulting socioeconomic contradictions erupted in the Yangjehae Rebellion of 1813 (the 13th year of King Sunjo's reign) and the Im-sul Jeju Peasants' Uprising of 1862 (the 13th year of King Cheoljong's reign). Thus, the history of Jeju yangtae represents a process in which macro-level shifts—namely, the development of the commodity-money economy and the expansion of Dogo capital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were projected onto and refracted through the island's production centers. It illustrates a facet of Jeju's socioeconomic history in which contradictions within the distribution structure ultimately led to a crisis in the production base and popular resistance.

Keywords: Jeju Yangtae, ljeon-gok, Naripo Chang, drifting, market merchants, Gyeonggang merchants, Dogo, Tongyeong hats

김나영

소 속: 제주특별자치도청

전자우편: knbh6877@naver.com

논문투고일 2026. 8. 16. / 심사완료일 2026. 9. 6. / 게재결정일 2026. 9. 15.